

별 책 1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 현 철 · 이 세 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Cheol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0.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목 차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1
1. 총괄표	11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25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5
(2) 고등교육법	30
(3) 과학관육성법	34
(4) 과학기술기본법	35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0
(6)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45
(7) 광주과학기술원법	47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48
(9) 교육공무원법	52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4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58
(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63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64
(1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66
(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68
(1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71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75
(18) 기술사법	75

(1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77
(2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78
(21) 뇌연구촉진법	82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85
(2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87
(2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90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94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8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106
(2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13
(30) 사립학교법	124
(31) 생명공학육성법	133
(3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34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36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139
(35)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143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4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48
(38) 영재교육진흥법	153
(39) 우주개발진흥법	157
(40) 원자력법	163
(41) 원자력손해배상법	175
(42)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80
(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81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90
(45) 유아교육법	191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196
(47) 자격기본법	201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4
(4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7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13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15
(52) 초·중등교육법	218
(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24
(5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31
(55) 평생교육법	233
(5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43
(57) 학교급식법	243
(58) 학교보건법	244
(5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46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9
(6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53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54
(6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258
(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60
(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64
(66) 한국고전번역원법	266
(67) 한국과학기술원법	268
(6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270
(6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73
(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274
(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75
(72) 한국연구재단법	276

(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79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81
(7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287
(7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288
(7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290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95

1. 총괄표	295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31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11
(2) 개항질서법	312
(3) 건설기계관리법	316
(4) 건설기술관리법	329
(5) 건설산업기본법	332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44
(7) 건축법	346
(8) 건축사법	357
(9) 경관법	361
(10) 골재채취법	361
(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67
(1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69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71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71
(15) 교통안전법	383
(16)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387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88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90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3
(20) 궤도운송법	395
(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03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06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7
(24) 도로법	409
(25) 도선법	410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3
(27) 도시개발법	416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18
(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419
(30) 도시철도법	420
(31)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422
(32)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3
(33)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5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6
(35) 물류정책기본법	431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436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37
(3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41
(39) 부동산투자회사법	448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51
(41) 선박법	454
(42) 선박안전법	456
(43) 선박투자회사법	459
(44) 선원법	461

(45) 전주상호보험조합법	465
(4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67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471
(48) 신항만건설촉진법	473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74
(5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498
(51) 임대주택법	500
(52) 자동차관리법	503
(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18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19
(55) 주차장법	523
(56) 주택법	529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539
(58)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40
(59) 지하수법	541
(60) 철도건설법	549
(61) 철도안전법	549
(6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553
(63) 택지개발촉진법	567
(64) 하천법	570
(65) 항공법	572
(6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586
(6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587
(68) 항로표지법	587
(69) 항만법	594
(70) 항만운송사업법	597
(71) 해상교통안전법	599

(72) 해양과학조사법	605
(73) 해양생태계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605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6
(75) 해양환경관리법	612
(76) 해외건설촉진법	619
(77) 해운법	621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32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총괄표	641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648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64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49
(3) 경륜·경정법	652
(4) 공연법	653
(5) 관광기본법	654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655
(7) 관광진흥법	655
(8) 국민체육진흥법	663
(9) 국어기본법	664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665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666
(12) 도서관법	667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69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673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674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4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677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78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8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82
(2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684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5
(23) 저작권법	687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9
(2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689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90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693
(28) 포블러윈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694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	3	1	·	6	교육과학기술부	제9366호	2009.7.31	
2	고등교육법	2	3	1	·	6	교육과학기술부	제9936호	2010.4.23	
3	과학관육성법	·	2	·	·	2	교육과학기술부	제8976호	2008.3.21	
4	과학교육진흥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	과학기술기본법	7	7	·	·	14	교육과학기술부	제9992호	2010.2.4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16	·	·	18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4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9705호	2009.5.22	
8	광주과학기술원법	2	3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9937호	2010.2.26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5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8890호	2008.3.14	
10	교육공무원법	4	2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10258호	2010.4.15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643호	2010.1.1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2	교육기본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915호	2008.6.22	해당없음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1	10	1	·	12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1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9호	2010.3.17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401호	2009.1.30	
1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	6	·	·	7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1호	2010.3.17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	4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0호	2010.3.17	
19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20	기술사법	2	·	1	1	4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1	·	2	3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4	·	3	7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3	뇌연구촉진법	2	1	·	2	5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7호	2010.3.17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	·	·	3	5	교육과학기술부	제9108호	2008.6.13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2	·	·	2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6	대한민국학술원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2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2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4	·	1	7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3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3	4	·	·	7	교육과학기술부	제8863호	2008.2.29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	13	·	·	16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1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7534호	2005.5.31	
3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5	·	1	9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3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674호	2007.12.14	해당없음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15	4	·	20	교육과학 기술부	제9908호	2009.12.31	
36	사립학교법	8	7	1	·	16	교육과학 기술부	제10258호	2010.4.15	
3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9401호	2009.1.30	해당없음
38	생명공학육성법	·	1	·	1	2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2호	2010.1.18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	·	2	3	교육과학기술부	제9932호	2010.1.18	
4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	4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10069호	2010.3.17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	6	·	·	8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2호	2010.3.17	
4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 자채용에 관한특별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6435호	2001.3.28	
4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1	·	5	9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6호	2010.3.17	
4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5	2	1	·	8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8호	2010.3.17	
45	영재교육진흥법	·	6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6	우주개발진흥법	1	5	1	.	7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7호	2010.3.17	
47	우주손해배상법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48	원자력법	6	1	12	.	19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6호	2008.2.29	
49	원자력손해배상법	2	2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9호	2010.3.17	
50	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1	.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6	2	2	.	10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4호	2010.3.17	
5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	1	.	.	2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3	유아교육법	1	4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10176호	2010.3.24	
5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7	·	·	7	교육과학기술부	제9629호	2009.4.22	
55	자격기본법	2	3	1	·	6	교육과학기술부	제9190호	2008.12.26	
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5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1	·	·	10	교육과학기술부	제8913호	2008.3.21	
5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1	1	·	5	교육과학기술부	제10046호	2010.2.26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9923호	2010.1.1	해당없음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0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4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61	초·중등교육법	5	6	·	·	11	교육과학기술부	제8917호	2008.3.21	
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5	7	·	12	교육과학기술부	제9935호	2010.1.22	
63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6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65	평생교육법	2	9	6	·	17	교육과학기술부	제9641호	2009.5.8	
6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9758호	2009.6.9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7	표준시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3919호	1986.12.31	해당없음
68	학교급식법	1	·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0호	2010.3.17	
69	학교도서관진흥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70	학교보건법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932호	2010.1.18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	1	3	·	5	교육과학기술부	제9763호	2009.6.9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6	·	·	8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7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9743호	2009.5.28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제8886호	2008.3.14	해당없음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9932호	2010.1.18	
76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2	.	1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518호	2009.3.25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	3	.	6	교육과학기술부	제8989호	2008.3.28	
7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	3	1	.	5	교육과학기술부	제8916호	2008.3.21	
79	한국고전번역원법	.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80	한국과학기술원법	2	2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9413호	2009.2.6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4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9414호	2009.2.6	
8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	1	·	·	2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1호	2010.3.17	
8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8호	2010.3.17	
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3	1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85	한국연구재단법	1	4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9518호	2009.3.25	
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640호	2009.5.8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	5	·	·	8	교육과학기술부	제9934호	2010.1.22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3	-	-	3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75호	2010.3.17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	3	-	-	4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73호	2010.3.17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3	3	-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계	134	260	48	21	463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원에 따른 조치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 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 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 는 취소(법 제18조 제3항)	외국교육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7일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 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 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 지 또는 해산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사실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승인(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 조 제1항)	외국학교법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 ·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위치, 대표자, 학칙, 학교 현장, 학사운영계획(학과 · 전공· 학생정원· 교육 과정 등을 포함한다), 개 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교사(校舍) 의 현황, 실험· 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교원의 명단, 개교예정일, 부설학 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 서, 외국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획 확인서,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도·감독(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외국교육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지예산서,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시행령 제9조 제3항)	외국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 교육기관의 폐쇄승인(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 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교직원 에 대한 처리계획,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 고등교육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교규칙 보고(법 제6조, 시행령 제4 조 제4항)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14일 이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 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개정할 때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0조)	보고
2	산업체 위탁교육(시 행령 제53조의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 격대학의 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 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 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법 제27조, 시행령 제17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국한 날부터 6월이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4	학교등의 폐쇄(법 제62조, 시행령 제72조)	학교설립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월 이내	학교설립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의 장 또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 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지도·감독(법 제5조)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6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고 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정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과학관육성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등록(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료 제출
2	폐관통보(법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등록과학관의 장	시·도지사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과학기술기본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 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 실적의 제출·보고한다.		보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조사·분 석·평가(법 제12조 제7항)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정 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과학기술예측 등(법 제13조, 시행령 제 22조 제4항, 제6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 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 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고
4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시행 령 제23조 제4항)	기획평가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5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시행 령 제23조 제5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결과를 보 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시행령 제23조 제7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보고
7	출연금 등의 지급 (시행령 제44조 제 4항)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분기별	사업집행실적		보고
8	출연금 등의 지급 (시행령 제44조 제 1항)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 에 다음 해 사업계획서,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		자료 제출
9	출연금 등의 지급 (시행령 제44조 제 5항)	기관, 법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 산서에 사업계획서와 비 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		
10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		자료 제출
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시행령 제27조 제3항)	기획평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1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시행령 제43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사업소요 명세서,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서류를 첨부		자료 제출
1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시행령 제2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협약과제 목록,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자료 제출
14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제40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7조 제4항)	감독관청의 장	국회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기관을 해산한 경우		보고
2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 연구 기관 (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의 지원	감독관청의 장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 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 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기관			결산사항		
3	결산서의 제출(법 제15조 제2항, 시 행령 제12조)	연구회	연구기관	매년 3월 31일 이내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결산 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 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 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 한 서류		자료 제출
4	연구기관의 평가(법 제28조 제1항, 시 행령 제21조)	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 재정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 를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 가결과서, 기획평가위원 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 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 고서의 서류		자료 제출
5	임원과 그 직무(법 제11조 제3항, 시 행령 제4조)	원장	소속연구회	3월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자료 제출, 승인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독관청의 장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		자료 제출
7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연구기관	연구회	매년 5월 31일 이내	해당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8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법 제13조 제5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소속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매년 6월 20일 이내	소관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9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법 제13조 제6항)	연구기관	소속연구회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		자료 제출, 승인
10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법 제13조 제6항)	연구기관	소속연구회	미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7항)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		승인
11	예산 및 사업계획 의 승인 등(법 제13 조 제8항, 시행령 제11조)	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매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승인 한 예산 및 사업계획		자료 제출
12	결산서의 제출(법 제15조 제1항)	연구기관	연구회		매 사업연도 종료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 요한 서류		자료 제출
13	결산서의 제출(법 제15조 제3항, 시 행령 제12조)	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매년 3월 31일 이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소 관연구기관의 결산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결산서의 제출(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감독관청의 장	국회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		자료 제출
15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법 제27조, 시행령 제18조)	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 산요구서로 사업연도별 사 업계획 및 예산, 사업연도 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자료 제출
16	연구기관의 평가(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연구회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 재정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 과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자료 제출
17	연구기관의 평가(법 제28조 제3항)	감독관청의 장	국회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 가결과		자료 제출
18	감독관청 등(법 제 29조 제4항)	감독관청의 장	국회	매년 4월 30일까지	평가결과		자료 제출

(6)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회원의 자격(법 제 6조 제4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공제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		자료 제출
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8조제1항)	공제회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적립금의 운용방법 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법 제16조의6제6항, 시행령 제8조제2항)	공제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재투자 현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		자료 제출
4	예산 및 결산(법 제19조 제2항)	공제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자료 제출

(7) 광주과학기술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위과정 등 보고 (법 제13조제2항)	광주과기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이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		보고
2	학사내용보고(법 제17조)	광주과기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보고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광주과기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자료 제출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1조 2항)	광주과기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 출결산서		
5	연구계획서 및 연 구보고서 등의 제 출(법 제21조 제1 항, 시행령 제34조)	광주과기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 술동향분석표,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기타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 고서류를 포함한 연구계 획서와 연구보고서		자료 제출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소청심사의 청구 등(법 제9조, 시행 령 제2조 제1항)	교원	심사위원회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소청심사청구의 취지,</p>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분 1부		
2	소청심사의 청구 등 (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2항)	교원	심사위원회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		자료 제출
3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시행령 제5조)	교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분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분		
4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항)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 또는 관계 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		자료 제출
5	감사원 요구에 의 한 재심(시행령 제 22조 제1항)	교원	심사위원회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9) 교육공무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법 제11조의 4 제2항, 시행령 제6조의 2)	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매년 4월 30일까지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		자료 제출
2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	특별연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7조(소요 경비의 반납 조치) : 의무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 제14조제3항)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등을 수령	나 지시사항에 위반	
3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	소속기관의 장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		자료 제출
4	평정결과의 보고(시행령 제14조)	확인자	임용권자	평정 후 10일 이내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		보고
5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시행령 제28조의9 제1항)	근무성적의 확인자	임용권자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 가 합산표		
6	회의록(시행령 제7 조 제1항)	인사위원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		보고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의 지정 등(시행령 제7조)	총괄 관리기관	교육감 및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초·중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법 제5조 제1항)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진·출입, 학업 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		
3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법 제6조)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층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정보</p>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법 제13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		보고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시행령 제17조 제2항)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 연구시설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		자료 제출
4	기본계획의 수립 등(시행령 제3조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		자료 제출
5	기본계획의 수립 등(시행령 제3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령 제 4조 제1항)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		자료 제출
7	이공계인력의 종합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법 제6조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관련 정보와 자료		자료 제출
8	업무의 위탁(시행령 제28조 제2항)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		
9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시행령 제7조 제2항)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자료 제출
10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의 습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과학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을 포함하는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되, 미리 재교육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훈련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재교육훈련 계획		
11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시행령 제17조 제2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 연구시설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		자료 제출
12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24조 제2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필요성, 목표, 추진전략·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경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착안사항 및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준, 기대효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		

(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법제7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시행령 제12조 제3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이하 “성과관리·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장은 성과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자료 제출
2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 장관		법 제5조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마련, 법 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법 제12조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업무를 수행하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		
3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시행령 제3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정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사(법 제11조 제2항)	감사	이사회 및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2	예·결산 등(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총장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총칙,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기구와 정원 일람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예·결산 등(법 제 22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총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 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 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 보고서, 그 밖에 결산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 부하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학병원장(법 제 1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자료 제출/원장은 이사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
2	출연 또는 보조(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대학병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월 30일까지	출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사업계획서,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기타 출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시행령 제11조 제3항)	대학병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자료 제출
4	출연 또는 보조(법 제18조 제3항, 시행 령 제12조 제1항)	대학병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4월 30일까지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의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기타 보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해당서류		
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자료 제출
6	결산서의 제출 등(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처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7	감독(법 제22조)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		보고/ 자료 제출

(1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 등 보고 (법 제19조)	원장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 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치과병원장(법 제 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치과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자료 제출/원장은 이사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
3	출연금 등(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요구서에 사업계획서,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출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출연금 등(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대학치과병원의 시설·설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과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 차입원리금 상환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보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결산서의 제출 등 (법 제20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장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그 밖에 결산 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류		자료 제출
6	감독(법 제21조)	원장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 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 류의 제출		보고/ 자료 제출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당사항 없음.						

(18) 기술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권한의 위탁 등(시 행령 제26조 제5항)	수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		보고
2	권한의 위탁 등(시 행령 제26조 제6항)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을 한 기술사가 기술사사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		
3	보고·검사등(법 제18조 제1항)	소속공무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 류를 검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부 보고
4	등록사항의 변경 또 는 휴업·폐업의 신고(법 제8조 제1 항, 시행령 제20조)	사무소등록 기술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 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 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 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부터 15일 이내		신고

(1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행령 제4조 제4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 보고
2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령 제3조 제4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자료 제출
3	세부사업의 위탁 (법 제6조 제2항)	세부사업의 위탁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기타 단위사업에 수반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 제2항, 시 행령 제3조 제3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중		내부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3조 제2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자료 제출
3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3조 제3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 보 고/12월 31일까 지 다음 해의시행 계획을, 1월 31 일까지 지난 해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추진 실적을 제출 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한 내에 제출
4	나노기술지도의 작성(시행령 제5조 제2항)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5	나노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법 제9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나노기술인력의 양성(시행령 제10조 제3항)	관계중앙행정기 관, 연구기관, 대 학 및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 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연 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나노기술전문연구 소의 지정(시행령 제13조 제4항)	나노기술전문 연구소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 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매년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뇌연구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추진실적의 보고 (시행령 제2조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뇌연구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뇌연구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뇌연구 투자의 확대 (법 제9조 제2항)	국가교육과학 기술자문회의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 의를 거친 후 『국가교육과 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 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뇌연구촉진기본계 획의 수립(법 제5 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전년도 2월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 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 진 실적을 개시연도의 전 년도 2월말일까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4	뇌연구촉진시행계 획의 수립(시행령 제4조)	뇌연구촉진시행 계획의 수립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2월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의 수립에 관하여 교육과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2 월말일까지 당해 중앙행 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나노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법 제9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지식경제부장 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2월말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 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 지부장관(이하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너연구축진을 위한 소 관별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위과정 등(법 제 12조의2 제2항)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과정별 수업연한·학기· 수업 일수 및 교과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학생(법 제12조의6)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전년도 2월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4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령 제4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2월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나노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법 제9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지식경제부장 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2월말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 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 지부장관(이하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너연구축진을 위한 소 관별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2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임용 재심사의 청 구 등(시행령 제4조 제1항)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	위원회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 고자 하는 자는 재임용 재 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인(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분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3조 제7항)	관계 기관	위원회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법 제20조)	이사장	대통령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2	지도·감독 등(법 제21조 제3항)	소속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부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지도·감독 등(법 제21조 제4항, 시 행령 제8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 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고
4	출연금 등(법 제14 조, 시행령 제3조 제3항)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4월 30일까지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 금수지계획서, 다음 연도 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 정손익계산서, 그 밖에 출 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 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7조, 시행령 제5조)	재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류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계획서 등의 제 출(법 제17조, 시행 령 제6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 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때에는 그 연도의 사 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 의 대비표, 그 연도의 대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 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공무원 등의 파견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재단은 공무원 등의 파견 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 요청사유·파견인원 및 파 견인력의 전문분야·자격 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 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 등 (법 제19조 제1항)	협회 또는 조합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감 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행정조치(법 제20조 제2항)	협회 또는 조합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지도·감독 등(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제8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고
4	정부의 출연금 등 (시행령 제3조 제2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 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1월 31일까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	실태조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등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실태조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법 제7조 제1항)	과학기술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 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 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적성시험의 시행 (법 제24조 제3항)	지정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 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인가취소 후 학생보 호(법 제42조 제3항)	인가가 취소된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 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 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 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조사위원의 임명 등 (시행령 제8조 제2항)	조사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 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 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	조사위원의 임명 등 (시행령 제8조 제4항)	현지조사단	법학교육위원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 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 학을 방문하여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조사위원의 임명 등 (시행령 제8조 제5항)	신청자	법학교육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조사위원의 임명 등 (시행령 제8조 제6항)	법학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결과보고서 및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8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법 제7조 제2항)	한국법학교수회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법 제14조)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대학 또는 관련 기관	법학교육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0	적성시험의 시행(시행령 제16조 제2항)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 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시행령 제18조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학칙, 교원 현황,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교육과정, 학생의 강의 평가,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자체평가(법 제32조, 시행령 제19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	평가위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시행령 제20조 제3항)	현지조사단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4	평가결과의 통지 등(법 제35조 제1항)	평가위원회	교육인적 자원부장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법 제36조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 의 관계자 또는 관 계 공무원·전문 가, 법학전문대학 원 및 관련 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 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 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 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6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법 제36조 제1항)	평가위원회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입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원으로서 임용 적 격 심의 방법과 기 준(시행령 제2조 제 3항)	교원미입용자	위원회		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교 원미입용자의 교직원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원미입용자 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미입 용자에게 교원으로서의 교 육활동 수행계획을 담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면 접위원의 수 및 각 평가요 소별 배점비율 등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자료 제출

(2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검사자의 관리(법 제15조 제1항)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 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 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2	보고·조사(법 제 20조 제1항, 시행 규칙 제9조)	사업자, 소속 공무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 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 하는 발주자로부터 의뢰 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개요, 검사과정 설명서,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행정조치(법 제21조 제2항)	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협회는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내부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출 요청시 비파괴검사 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 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 실태,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과학기술부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실태조사(법 제9조 제2항)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7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협회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과외검사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협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비과외검사사업자는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비과과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법 제13조 제1항)	사업자	비과과검사를 의뢰한 자		사업자는 비과과검사를 의 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 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 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과과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 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 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와 검사(법 제 30조)	공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2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법 제58조)	학교기관의 장	공단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		신고/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급여의 환수(시행령 제25조 제2항)	학교기관의 장	공단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
4	급여의 환수(시행령 제25조 제3항)	공단	소속학교기관의 장		공단은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소속학교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정년 또는 근무상 한연령(시행령 제 53조의2 제2항)	공단	소속학교 기관의 장		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료·등급의 구분은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것에 따른다.		신고
6	장애등급의 조정 등 (시행령 제57조 제 1항)	공단	소속학교 기관의 장		장해연금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애진단서, 장해연금증서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공단	소속학교 기관의 장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당 연도 예상 근로 소득 자료를 신규 임용 신고 시 제출			
8	퇴직연금·조기퇴 직연금 및 장해연금 의 지급정지(법 제 51조 제1항)	퇴직연금·조기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소속연금취급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임용되거나 퇴직한 시점에서 10일 이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 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 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 직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 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 퇴직신고서를 공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예산(법 제24조)	이사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10	결산(법 제25조)	이사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보고와 검사(법 제 30조)	공단, 소속공무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2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법 제31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	공단	7일 이내에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
13	재직기간의 합산절차(법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	소속학교 기관의 장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 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법 제32조의6 제3항)	교직원이었던 자	공단		재요양의 신청절차 및 결 정내역서 통지 등은 제30 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교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에 재요양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 청인이 재요양승인신청서 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야 한다.		자료 제출
15	퇴직급여 청구(시행 령 제53조 제1항)	퇴직연금·조기 퇴직연금·퇴직 연금일시금·퇴 직연금공제일시 금 또는 퇴직일시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소속학교 기관의 장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 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 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 (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 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6	국가부담금의 계상 (시행령 제70조 제2항)	공단	관계 중앙행정 기관(대통령 소 속기관 및 국무 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 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 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 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7	강제징수(시행령 제73조 제3항)	공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공단이 체납기간이 6월이 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 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에 해당하는 사 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8	심사청구의 절차 (시행령 제81조 제1항)	공단	급여제심 위원회		급여에 관한 결정·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제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9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법 제57 조 제2항)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	학교경영 기관의 장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0	공단의 권한 등(법 제19조 제1항)	급여에 관련된 사람	공단		공단은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련된 사람에게 급여와 관련한 보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0) 사립학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산이전의 보고 (법 제8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등기한 학교법인	관할청	등기한 날부터 3월 안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재산 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의 보고 (시행령 제9조)	학교법인의 감사	관할청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학교법인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고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법 제25조의3 제2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조정위원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제출(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학교법인	관할청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 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되 예산의 경우에 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시행령 제 14조 제2항)	학교법인	관할청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	정관변경(법 제45 조, 시행령 제18조)	학교법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 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제70조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7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법 제54조 제1항, 시행령 제 23조)	학교법인	관할청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8	보고·조사등 (법 제70조)	학교법인	관할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9	재산의 관리 및 보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학교법인	관할청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쌍방의 재산, 이사회회의록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고,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피담보액, 담보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	예산(법 제24조, 시행령 제6조 제3항)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1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법 제18조의2 제3항)	이사회	관할청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12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등(시행령 제 15조의4 제5항)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위원회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등(시행령 제 15조의4 제7항)	관계기관·단체	위원회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14	재직기간의 합산절차(법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	소속학교 기관의 장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간합산승인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5	제요양의 요건 및 절차(법 제32조의6 제3항)	교직원이었던 자	공단		제요양의 신청절차 및 결정내역서 통지 등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교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에 재요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인이 재요양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6	보고징수등 (법 제48조)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관할청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료 제출

(31) 생명공학육성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의 수립(법 제 4조 제1항)	관계부처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2	사후승인통관절차 등(시행령 제23조 제2항)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 여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 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 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 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의 수립(법 제 4조 제1항)	관계부처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생 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시 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 황,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 업 실적 및 계획,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 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의 내용을 포함 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생명연구자원정보 센터의 지정절차(시 행령 제8조 제1항)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설 및 인력 보유 현황, 정 보시스템 구축 현황, 생명 연구자원 정보 관리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그 밖 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법 제19조 제2 항,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통 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 등의 보 고(법 제16조)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 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보고
2	감독(법 제18조)	대학병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 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3	원장의 추천(시행 령 제10조 제2항)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 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		자료 제 출/이사 회의 이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장 을 거 처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에 게 제출
4	출연금의 요구 (시행령 제16조)	대학병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8월 전	대학병원이 출연금을 받고 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 에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 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 명할 수 있는 자료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시행령 제18조 제1항)	대학병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대학병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결산서의 제출(법 제 17조, 시행령 제22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 제17조)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고
2	감독(법 제19조)	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원장의 추천(시행령 제9조 제2항)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이사회회의 이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4	검직교원 요청절차(시행령 제12조)	원장	인사위원회		원장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 제출
5	출연 또는 보조(법제14조, 시행령 제15조)	대학병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8월 전	치과병원이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그 밖에 출연 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서류를 갖추 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 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출연 또는 보조(법 제14조 제2항, 시 행령 제15조)	대학병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8월전	치과병원이 규정된 보조 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 학계의 교육 및 연구에 관 한 경비보조와 치과병원 의 시설치의학계의 교육 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 서, 치과병원의 시설·설 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차 관원리금 상환계획서, 추 정손익계산서, 그 밖에 보 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해당 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치과병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치과병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출
8	결산서의 제출(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실적과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임용신청(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외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의 사항을 기재한 채용신청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법 제5조 제2항, 시 행령 제4조 제1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 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 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보고
2	실태 조사(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 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 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 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3	적극적 조치(법 제 11조 제3항, 시행 령 제13조)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 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보고
4	기본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3항)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책목표등 에 따라 5년마다 소관분 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 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 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5	기본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5항)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내부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기본계획 등(시행령 제4조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자료 제출
7	기본계획 등(시행령 제4조 제3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실태 조사(법 제6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 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9	여성과학기술인지 원센터의 설치·운 영(시행령 제17조 제4항)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하는 시·도지사는 지 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 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계 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자료 제출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법 제 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보고
3	보험가입 등(시행령 제15조 제3항)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연구주체의 장은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교육과학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4	연구실 사용제한 등 (법 제17조 제2항)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주체의 장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실 사용제한 등 (법 제17조 제3항)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고
6	신고(법 제19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연구주체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사고조사의 실시 (법 제16조 제1항)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8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법 제16조 제3항)	사고조사반의 책임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8) 영재교육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영재학급의 설치· 운영(법 제7조, 시 행령 제20조 제1항)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 육감에게 학칙,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 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 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영재교육에 필 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소요경비의 조 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 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 승인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법 제8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	교육감	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 제출/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3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법 제8조, 시행령 제21조 제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4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시행령 제38조)	연구주체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영재교육연구원이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3 제1항)				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목적, 명칭, 위치,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연수원 규칙,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례자 선정 등(법제16조,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	교육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 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특례자의 전학·배 치 등(법 제18조,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	교육감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9) 우주개발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탁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3조 제 3항)	수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 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법 제11조 제 1항,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			변경 후 30일 이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 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 권이 미치는 지역·구조 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 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 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 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 표자의 성명·주소를 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함한다), 탑재체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의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우주물체의 국내등록(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예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예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발사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	우주물체의 국내등록(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예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통보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 사(법 제24조 제2 항, 시행령 제22조)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교육 기관 및 기업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교육기관 및 기 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7	수탁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3조 제 1항)	수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주소 및 대표 자의 성명, 위탁업무를 시 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위탁업무의 개시 예정일,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 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의 성명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및 약력,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p>		

(40) 원자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법 제9조의2 제6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법 제20조의8 제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 또는 면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제고, 우수연구원 및 우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원자력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재투자,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3	사고의 조치 등(법 제89조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 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법 제98조제1항, 시행령 제301조)	원자력관계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한 때,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법 제98조제1항, 시행령 제301조 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8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6	보고·검사등(법 제103조제1항, 시행령 제199조, 시행규칙 제125조)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업자와 국제규 제물자를 취급하 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 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 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수 있다.		
7	환경보전(법 제104 조의1제1항, 시행 규칙 제133조)	발전용 원자로,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 원 자로, 핵연료주기 시설, 사용후핵연 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발전용 원자로, 열출력 100 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 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 치자 및 운영자는 교육과 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실시하여 이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8	표준설계인가(법 제12조의2제1항)	동일한 설계의 발 진용 원자로 및 관 계시설을 반복적 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 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 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 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계량관리규정(법 제15조의2제1항)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 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 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 물질”이라 한다)의 계량 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 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법 제31조제1항)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 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설의 해체계획서(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법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	연구용등원자로 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시설검사(시행령 제128조제3항)	가공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3	사용전 검사(시행령 제149조 제3항)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4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법 제55조)	핵연료주기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사업개시등의 신고 (법 제55조의2, 시 행규칙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 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 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 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6	핵원료물질의 사 용신고등(법 제64 조제1항, 시행령 제 179조, 180조, 시행 규칙 제52조)	핵연료주기사업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 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 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 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7	업무대행자의 등록 (법 제6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96조 제3항)	업무대행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8	운반신고(법 제86조 제1항)	원자력관계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 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운반신고(법 제86조제2항)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			고자 하는 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1) 원자력손해배상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및 검사(법 제 16조 제1항)	원자력사업자, 소속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료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22조)	정부	국회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의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사고의 조치 등 (법 제89조 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공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성명(법인인 경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운반을 위탁받은 자			<p>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변환에 있어서는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있어서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수량,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p>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법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법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시행령 제6조 제1항)	원자력관계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사업자가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2)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법 제11조)	원자력사업자	정부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보고

(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 등(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 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협을 받은 일 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 황,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 지와 내용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2	원자력사업자의 의 무 등(법 제21조 제1 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 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 지 및 수습을 위하여 방사 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 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 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관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보고, 방사능재 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 구의 설치·운영,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 보의 공개, 방사선사고 확 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과 조직의 확보,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p>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누구든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선박 등의 화재·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보고·검사 등(법 제44조 제1항, 시 행령 제3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제39조제2항에 따 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 료기관의 장, 방사 능재난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기 관의 장, 『원자력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규제물 자 중 핵물질을 취 급하거나 관련 연 구를 수행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제39조제2 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의 장,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원자력법』 제15조의 2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 출, 제출된 서류의 보안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 독을 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용개시 5월 전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 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 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 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 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 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7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 임(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 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선박 등의 화재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12조)				· 사고 또는 방사성물질 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 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과 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 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 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 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방사선비상진료기 관의 지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차 또는 2차 방사 선 비상진료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 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 료기관지정신청서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방사능재난사후대 책의 실시 등(시행 령 제37조 제1항)	시 장 · 군 수 · 구 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 는 기관	시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 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 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 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0	보고·검사 등 (법 제44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제39조제2항에 따 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 료기관의 장, 방사 능재난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기	시 · 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 사업자, 제39조제2항에 따 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 선비상진료기관의 장, 방 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원자		보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의 장, 「원자력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원자력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법 제23조)	사무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사항에 대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법 제14조 제 9항)	감사	총회		감사(감사)는 매년 위원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5) 유아교육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법 제23조)	원장	관할청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시행령 제7조 제4항)	원장	관할청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감사(법 제14조 제9항)	감사	총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질문(법 제 26조의4)	감사	총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유치원의 폐쇄 (시행령 제36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관할청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시행계획의 수립절 차 등(시행령 제4 조 제4항)	위원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 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 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 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 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	유아교육에 관한 업 무의 위탁(시행령 제7조 제4항)	위원회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 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위원회가 『과학기술기 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 기술위원회”라 한다)와 협 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등(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 제출
4	위원회의 특정평가등(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법 제9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위원회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시행령 제16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7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시행령 제17조 제1항)	주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추진계획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47) 자격기본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시행령 제 23조 제4항)	등록관리기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등록관리기관은 등록대장을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현황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 여야 한다.		
2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법 제29조 제3항)	주무부장관	소관 공인자격관리자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를 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3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법 제26조 제2항)	공인자격관리자	주무부장관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 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고
4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21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	정보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 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2항)	리·운영하는 자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시행령 제25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6	공인·재공인 신청서(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	경제교육 주관기관장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법 제16조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중앙특수교육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령 제6조 제8항)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3	장애의 조기발견 등 (시행령 제9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 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 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 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 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 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 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 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장애의 조기발견 등 (시행규칙 제2조 제 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 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시행령 제25조 제1항)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칙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학교법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법인 등은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2	수업연한 등 (시행령 제4조 제5항)	학교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		보고/공관장을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3	학교발전기금(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	운영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학교발전기금(시행령 제8조의2 제8항)	운영위원회	관할 공관장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재산 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학교법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담보 제공에 관하여 는 담보로 제공할 재산 목 록, 피담보액, 담보권자,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이 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6	교원과 직원의 임면 (법 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학교법인	공관장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	학교법인은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 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 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임명보고의 경우 인사 기록카드 사본, 제청권자 의 제청서 사본 이사회 회 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임 보고를 할 경 우 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7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법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공관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8	보고·조사 등(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공관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장부 등에 대한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검사·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의 벌금	
9	학교헌장(법 제2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자 하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공 관 장 을 거 처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에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현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계 보고
10	임원의 승인 등(법제15조, 시행령 제9조 제3항)	공관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7일 이내	공관장은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에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의안의 이송 등(법제14조 제1항)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감, 시·도회의의장	5일 이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법 제15조 제2항)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교육감의 선결처분 (법 제29조 제2항)	교육감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
4	교육감 협의체(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당해협의체의 대표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의안의 발의 및 제출 (법 제13조)	교육위원회	시·도의회회장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직업교육훈련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 차 등(시행령 제3 조 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매년도 2월말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기본계획 및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군 및 자치구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도 2월말까지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업교육훈련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 차 등(시행령 제3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심의회	매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제출 받은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년도 3월 31일까지 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현장실습(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2항)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 직중인 자는 당해 직업교 육훈련생의 담당업무가 직 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행령 제2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2) 초·중등교육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업일수(시행령 제45조)	학교의 장	관할청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일 경우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매학년 170일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휴업일 등(시행령 제47조 제2항)	학교의 장	관할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법 제60조 제1항)	국·공립학교의 장	관할청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학교발전기금(시행령 제64조 제5항)	학교의 장	운영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5	학교발전기금(시행령 제64조 제8항)	운영위원회	관할청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고
6	취학 아동 명부의 작성 등(시행령 제15조 제2항)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	읍·면·동의 장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보호자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취학 아동 명부의 작성 등(시행령 제 15조 제3항)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읍·면·동의 장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8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시행령 제 31조의2 제2항)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징계조정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시행령 제105조의3 제2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0	학교회계의 운영(법 제30조의3 제2항)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학교회계의 운영(법 제30조의3 제5항)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2	학교의 폐쇄(시행 령 제106조)	학교의 설립·경영자	관할청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채무자의 신고의무 (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 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 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 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 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 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법 제20조 제 1항)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출국 40일 전까지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4	종합소득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등(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는 같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6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1) 매 사업연도 개 시일 전 2)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 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 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8	대출 신청(시행령 제6조제2항)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 재단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재산 등의 조사(시 행령 제16조제1항)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은 장기미상환 자 및 그 배우자, 『소득세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 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 서 제출의무자의 사람에 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 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시행령 제27조)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11	기한 후 신고(시행령 제28조)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법 제38 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 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 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 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 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하며, 금융회 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 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 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 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 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 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 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5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출연금등(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제4항)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	중앙행정 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 기구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산(법 제6조 제1항)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연구협약의 체결 (법 제8조의3)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단체의 장		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5) 평생교육법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평생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각급학교의 장	관할청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2조 제4항)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신고(시행령 제52조 제1항)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 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7	언론기관 부설 평 생교육시설(법 제 37조3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교육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 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8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신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67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9	평가인정의 절차 등 (시행령 제14조의2)	진흥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제1항 학습과정의 명 칭, 교육시설 및 설비, 교 육목표, 학습과정의 내용 과 운영기간, 학습자 수, 교원·강사, 교재 및 교수 방법, 학습자 관리 방안,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한 상세기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시행령 제20조제1항)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1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시행령 제20조제2항)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평생교육사 양성기 관의 지정(시행령 제21조 제2항)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대표자의 성 명·주소, 개설예정일 사 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 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13	학교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의 등록(시 행령 제26조제1항)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 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 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시행령 제28조제1항)	평생교육기관	교육감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시행령 제29조제1항)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	교육감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1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시행령 제69조 제1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교육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습수·정원·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재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시행령 제74조제1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교육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부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제3항, 시 행령 제3조의2 제2항)	폐교재산을 감액 대 부받고자 하는 자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 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 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57) 학교급식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교급식의 개시 보 고 등(시행령 제3 조 제2항)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 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8) 학교보건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정화구역의 관리자	교육장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평가서의 제출·검토 등(시행령 제10조)	학교용지 선정자	교육감		학교용지 선정자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	교육장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5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 등(법 제12조 제1항)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	감독청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자료 제출
2	준공검사등(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	감독청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날부터 7일이내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 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감독청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준공검사 등(법 제 13조 제1항)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감독청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5	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시행령 제10조 제1항)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자	감독청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전문위원회의 운영 (시행령 제7조 제3항)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법 제7조 제2 항, 시행령 제10조	학교장	교육감	점검 후 2개월 이내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항)				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도·감독(법 제 25조)	공제회	교육감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법 제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조 제1항)		학교안전공제회		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법 제42조 제1항)	소속 직원	공제회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비용의 보전(시행 규칙 제7조 제2항)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	공제회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 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7	공제료에 대한 이 의 신청(시행규칙 제 8조)	공제가입자	공제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 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 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8	기금운용계획(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	공제가입자	교육감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개발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분양공급계약체결 일부터 30일 이내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 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 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 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 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 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교육감의 임무(법 제11조 제2항)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	교육감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 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보고
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법 제14조 제2항)	전문상담교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 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 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 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피해학생의 보호 (법 제16조 제1항)	학교의 장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 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	자치위원회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5	학교의 장의 의무(법 제19조)	학교의 장	교육감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
6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법 제20조)	교원	학교의 장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6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출연금의 사용 등(법 제21조의4 제2항)	주관학술기관의 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협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	주관학술기관의 장은 협 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 에 학술연구 등 사업의 계 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 표,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 는 단체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의 서류를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첨부하여 출연금의 사용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조성 및 운 용상황 보고(시행령 제3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월 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 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 음달 20일까지 분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업무의 위탁(시행 령 제44조 제2항)	기금수탁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금수탁자는 업무를 위 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시행 령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	교육감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 부등록을 받은 자는 교육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 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 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보고
2	지도·감독 등(법 제16조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교육감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 · 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법 제10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학원설립·운영자	교육감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	교육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약 교습자가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휴소)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3)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	교육감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행령 제5조 제2항)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감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자 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숙박시 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 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이용료, 시 설·설비, 개강 예정 연월 일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 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시행령 제18조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학습과정의 평가인정(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학점인정 절차(시행령 제10조 제1항)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학력인정 절차(시행령 제12조 제1항)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 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학위 수여 절차(시 행령 제15조 제1항)	학위를 받으려는 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학위를 받으려는 자는 신 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6) 한국고전번역원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산보고(법 제19조)	번역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 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 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법 제13조 제2항)	번역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법 제18조)	번역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학위과정 등(법 제 14조 제1항)	총장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학생(법 제18조)	번역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과학기술원의 박사·전문 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4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 인구와 관련된 국내의 기술동향 분석표,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그 밖에 연구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시행령 제3조 제1항)	교육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정보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출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력의 파견요청 (법 제8조 제1항)	교육정보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교육정보원은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기간·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산(법 제22조)	공제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 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예산(법 제21조)	공제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 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 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자료 제출

(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서 등(법 제14조)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 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결산보고(법 제15조)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 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 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 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대학 평가(법 제18 조 제2항)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협의회는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산등의 보고(법 제 24조, 시행령 제7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차입(법 제26조 제 3항, 시행령 제2조 제항)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재단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사학진흥채권의 발행(법 제27조 제4항)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재단은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사업계획서등의 제출(법 제23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 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자료 제출

(72) 한국연구재단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임원의 직무(법 제 8조 제2항)	감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과 이사회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 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 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출연금(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매년 5월 31일까지	재단은 출연금을 받으려 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 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 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 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사업계획서 등의 제 출(법 제14조, 시행 령 제6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 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출
4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 령 제7조 제7항)	재단	외부평가위원회		외부평가위원회는 연구사 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결산서의 제출(법 제 16조, 시행령 제8조)	재단	외부평가위원회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 입(세입)·세출(세출) 결 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 적의 대비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 사의 의견서, 세입·세출 결 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 의록을 첨부하여 공인회 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 정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 및 결산보고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안전기술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 업계획 집행실적을 재무 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 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 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7조, 시행령 제6조)	안전기술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 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 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제출 요청 등 (법 제19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	안전기술원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임원의 직무(법 제 10조 제3항)	감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과 이사회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26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3	기금의 회계기관 (법 제28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재단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재단의 임직원 중에서 기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수입 담당 임직원,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직 원, 기금지출 직원, 기금 출납 직원의 사람을 임명 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 당 임직원은 기금수입 정 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 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 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 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4	출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4조)	재단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재단은 출연금을 받으려 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 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 구서에 사업계획서, 추정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이 확정되면 재단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채권 발행의 신청 (시행령 제5조)	재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단은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감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체 및 대상, 사업 내용, 사업 비용,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예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출
7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 계정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에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각각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8	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50조 제1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대학생 본인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관		과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및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서 등(법 제14조)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 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 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 되기 20일 전에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자료 제출
2	결산보고(법 제15조)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 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 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전문대학 평가(법 제18조 제2항)	협의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 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시행령 제12조 제3항)	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사업계획서(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구원은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3	연구요원 등의 파견 (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연구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		연구원은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직급·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
4	결산보고(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	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 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 보고서에는 사업집행실적 표,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7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법 제5조 제2항)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가핵융합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보고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법제8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5일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0만원이하 과태료	보고
3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시행령 제11조 제6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4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6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

I.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주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3	개항질서법	·	·	6	1	7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4	건널목개량촉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사항 없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	건설기계관리법	1	·	15	1	17	국토해양부	제9850호	2010.6.30	
6	건설기술관리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848호	2009.12.29	
7	건설산업기본법	·	·	6	1	7	국토해양부	제8971호	2008.3.21	
8	건축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6.22	해당사항 없음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2	·	2	국토해양부	제9857호	2009.12.29	
10	건축법	3	·	16	1	2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11	건축사법	·	1	8	1	10	국토해양부	제9187호	2009.3.27	
12	경관법	·	·	·	1	1	국토해양부	제8974호	2008.3.21	
13	고속국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사항 없음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4	골재채취법	2	·	7	1	10	국토해양부	제9636호	2009.10.23	
1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38호	2009.8.7	해당사항 없음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	1	1	5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1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439호	2009.2.6	해당사항 없음
18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¹⁾	·	·	3	2	5	국토해양부	제10272호	2010.10.16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1	·	1	국토해양부	제9595호	2009.4.1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15	1	16	국토해양부	제9596호	2009.7.2	

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07호	2009.12.31	해당사항 없음
22	교통안전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388호	2009.1.30	해당사항 없음
23	교통안전법	·	6	4	2	12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	1	2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2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05호	2009.8.23	해당사항 없음
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	·	1	2	5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27	국제선박등록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41호	2009.8.7	해당사항 없음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	·	·	1	4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9	국토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2	1	3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31	궤도운송법	3	·	10	·	13	국토해양부	제9636호	2009.10.23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3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256호	2008.12.26	제외 (외통부)
3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6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1	1	국토해양부	제9869호	2009.12.29	
3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	·	2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37	도로법	·	1	4	·	5	국토해양부	제9730호	2009.5.27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8	도선법	·	·	4	1	5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	1	2	5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0	도시개발법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3	·	3	국토해양부	제9860호	2009.12.29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	1	·	2	국토해양부	제9775호	2009.12.10	
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386호	2010.1.31	해당사항 없음
44	도시철도법	·	·	4	1	5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4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3	·	3	국토해양부	제9778호	2009.12.10	
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	5	1	7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51	물류정책기본법	·	·	6	3	9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5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5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64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	8	1	10	국토해양부	제9055호	2008.3.28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	4	3	9	국토해양부	제9340호	2010.1.1	
56	부동산투자회사법	1	1	·	2	4	국토해양부	제9599호	2009.4.1	
57	사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사항 없음
5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106호	2008.9.6	해당사항 없음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60	선박등기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70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61	선박법	1	·	6	·	7	국토해양부	제9870호	2009.12.29	
62	선박안전법	·	1	1	1	3	국토해양부	제9871호	2009.12.29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3	선박직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74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64	선박투자회사법	2	1		2	5	국토해양부	제9707호	2009.5.22	
65	선원법	2	·	3	1	6	국토해양부	제9851호	2009.12.29	
6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3	1	1	·	5	국토해양부	제9852호	2009.12.29	
6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사항 없음
68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6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4	1	9	국토해양부	제9849호	2009.12.29	
7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1	·	1	·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71	신항만건설촉진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2	23	2	28	국토해양부	제9733호	2009.11.28	
74	연안관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75	외국인토지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186호	2009.6.27	제외
7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77	유료도로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53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7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	·	1	1	4	국토해양부	제9740호	2009.11.28	
7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6호	2009.3.25	해당사항 없음
81	임대주택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863호	2009.12.29	
82	자동차관리법	4	·	7	1	12	국토해양부	제9867호	2010.2.7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2	·	·	3	국토해양부	제9450호	2010.2.7	
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2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3	·	·	3	국토해양부	제9601호	2009.4.1	
86	주차장법	·	3	5	·	8	국토해양부	제9341호	2009.1.7	
87	주택법	5	2	11	2	2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8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	·	·	·	1	국토해양부	제9777호	2009.12.10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90	지하수법	3	1	13	2	19	국토해양부	제9717호	2009.11.28	
91	철도건설법	·	·	·	1	1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92	철도사업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08호	2009.4.1	해당사항 없음
9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94	철도안전법	·	·	5	·	5	국토해양부	제9610호	2009.4.1	
9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4	13	1	18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96	택지개발촉진법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865호	2010.6.30	
9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77호	2010.1.27	해당사항 없음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33호	2009.10.23	해당사항 없음
99	하천법	·	1	3	·	4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10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3호	2009.6.26	해당사항 없음
101	한국공항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사항 없음
102	한국도로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34호	2009.7.23	해당사항 없음
103	한국수자원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04	한국철도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05호	2010.1.1	해당사항 없음
10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391호	2009.1.30	해당사항 없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0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0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06호	2009.10.1	해당사항 없음
108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09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53호	2009.2.6	해당사항 없음
110	한국해운조합법	·	·	·	·	·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사항 없음
1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81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12	항공법	5	·	27	·	32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11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	·	·	·	1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사항 없음
115	항로표지법	·	·	13	1	14	국토해양부	제9855호	2009.12.29	
116	항만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117	항만법	·	·	8	1	9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18	항만운송사업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19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35호	2009.5.27	해당사항 없음
120	해상교통안전법	2	·	6	1	9	국토해양부	제9731호	2009.5.27	
121	해양과학조사법	1	·	·	·	1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1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854호	2009.12.29	해당사항 없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	·	2	국토해양부	제9454호	2009.8.7	
1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17호	2009.11.28	해당사항 없음
1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3	11	1	17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126	해양환경관리법	2	2	8	2	14	국토해양부	제9872호	2009.12.29	
127	해외건설촉진법	2	·	2	·	4	국토해양부	제9856호	2009.12.29	
128	해운법	·	·	15	1	16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14	2	16	국토해양부	제8980호	2008.7.14	
13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사항 없음
	계	70	46	369	63	548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개발제한구역에서 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 고(법 제12조 제2 항,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내 의 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 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행정처분(법 제30조), 1억 원 이내의 이 행강제금(법 제30조의2, 시행령 41조 의2, 시행규칙 제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시행령 제42조)	

(2) 개항질서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법 제41조)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			개선명령(법 제42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보고·서류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입출항신고(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내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 -외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	신고 (신고 면제 사항 있음)
3	정박구역이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신고(법 제6조 제3항)	선장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즉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장박한 사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선박수리신고(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3호의2 항계 내 선박수리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신고(신고확인서 발급, 시행규칙 제5조제5항)
5	선박계선신고(법 제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지 4호 선박계선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신고(신고확인서 발급, 시행규칙 제5조제5항)
6	선박의 항로 정박·정류 신고(법 제12조 제2항)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박시키려는 자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불가능한 경우,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48조)	
7	위험물 반입 신고 (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	지방해양항만 청장(특별시 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반입 24시간 전	별지 제5호 위험물 반입 신고서에 별지 제6호 위 험물 일람표 첨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신고 -반입신 고 확인 서 발급

(3) 건설기계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법 제35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건설기계사업자, 교육·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설 또는 업무 관련 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보고 (행정 조사적 성격)
2	검사결과의 보고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14조)	검사대행자	등록지 시·도지사	검사후 5일 이내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차대		-보고 -국토해양부장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일련번호, 감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검사기준에의 적 합여부, 예상정비소요기간 (감사에 불합격한 건설기 계에 한함)</p>		<p>관이 건 설기계 의 관리 에 관하 여 운영 하는 정 보통신 망에 입 력하는 경우에 는 입력 으로 보 고를 대 신할 수 있음 -시·도 지사는 건설기 계등록</p>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부에 검사의 종 류 , 검사일 자, 검 사유효 기간 등 을 기재 해야 함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 5조)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도지사	건설기계등록사항 에 변경(제6조에 따 른 주소지 또는 사 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상속의 경 우에는 상속개시일 부터 3개월)이내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 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건설기계등록증, 건 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건설기계에 한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건설기 계등록 증및건 설기계 검사증 교 부 , 검사대 행자에 의 통보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5조의2)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함)	시·도지사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매도사실 증명 서류		-신고 -신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5 조의2)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시·도지사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 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첨부		
6	등록말소 신청자의 수출이행 여부 신고 (법 제6조 제3항, 시 행규칙 제10조의2)	건설기계를 수출 하기 위해 등록말 소를 신청한 자	시·도지사	등록말소일부더 9개월 이내	별지 제13호의2 수출이행 여부신고서 수출이행 사실 증명 서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수리의 무 규정 있음
7	등록번호표 제작자 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법 제8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 16조)	사업장소재지 관 할 시·도지사	등록번호표 제작자		별지 제17호 등록번호표제 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건설기계 형식신고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시 행규칙 제44조의2, 제46조)	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무한궤도 식에 한함), 로더 (무한궤도식에 한 함), 지게차, 스크 레이퍼, 기중기(무 한궤도식에 한함),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플 랜트, 콘크리트피 니셔, 콘크리트살 포기, 아스팔트믹 싱플랜트, 아스팔 트피니셔, 골재살 포기, 쇄석기, 공 기압축기, 천공기 (무한궤도식에 한 함), 향타 및 향 발기, 사리채취기,	국토해양부장관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별지 제26호 건설기계형 식신고서 별지 제3호 건설기계제원 표, 건설기계의 외관도,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 용이 『건설기계 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 로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 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 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타워크 레인형 식신고 는 한국 산업안 전공단 에 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준설선, 특수건설 기계, 타워크레인) 의 제작 등을 한 자			경우에 한함).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법 제18조 3 항, 시행령 제11조, 제44조의2, 제46조)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 신고를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별지 제26호 건설기계형 식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 건설기계제원 표, 건설기계의 외관도, 건 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 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 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 함),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경미한 사항신 고 제외 (법 제 3조 제 3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한함),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법 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6조)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별지 제26호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별지 제3호 건설기계제원표, 선적서류 사본, 신용장 사본,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12	등록사업 개시신고 (법 제24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사업을 개시한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법률에는 개시 신고의 무가부과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 없음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등록사업 휴지 신고(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1항)	건설기계사업자	시·도지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33호의2 건설기계사업휴지신고서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에 한함), 건설기계등록증(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함), 사업의 휴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14	등록사업 폐지신고(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33호의2 건설기계사업폐지신고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의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휴지사업 재개 신고(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2항)	건설기계사업자	시·도지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의2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16	매대용건설기계 사업장 제시 신고(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70조)	건설기계매매업자	시·도지사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4호의2 매대용 건설기계제시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별지 제 35호 중 고건설 기계매 매관리 대장 작 성·관 리, 3년 간 보존 의무(시 행규칙 제70조 제4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매매용건설기계 매도 신고(법 제25 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70조)	건설기계매매업자	시·도지사	매도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4호의3 건설기 계매도신고서 별지 제8호의3 양도증명 서 사본, 건설기계등록 증 사본		- 신고 - 별지 제 35 호 중 고 건 설 기 계 매 매 관 리 대 장 작 성 · 관 리, 3 년 간 보 존 의 무(시행 규 칙 제 70 조 제 4 항)
18	건설기계조종사의 신분 변경 신고(법 제30조, 시행규칙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변경사실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군복 무·국외거주·수 형·질병 기타 부	별지 제44호 기재사항변 경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주소변 경의경 우에는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신고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단서)

(4) 건설기술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건설기술자 인정 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감리전문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별지 제56호의2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법 제6조의4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의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3조)	-신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의무 (법 제6조의2 제2항)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고
3	휴업신고(법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	시·도지사	휴업한 경우	별지 제64호의2 감리전문회사휴업신고서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고
4	폐업신고(법 제28조제3항, 시행규칙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	시·도지사	폐업한 경우	별지 제64호의2 감리전문회사폐업신고서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고
5	영업양·수도신고(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1항)	감리전문회사 (양도인·양수인 공동)	시·도지사	영업을 양·수도하려는 경우	별지 제64호의3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감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신고(법 제 29조의2 제1항 제 2호, 시행규칙 제 38조의3 제2항)	합병전 법인의 대 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 는 법인의 대표 자(공동)	합병 후에 존속 하거나 신설되 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		별지 제64호의4 감리전 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고
7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신고(법 제25조 제2항, 시 행령 제49조 제5 항, 시행규칙 제28 조 제4항)	품질검사전문기관 으로 등록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3호 변경사실 증명 서류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5) 건설산업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법 제49조 제1항)	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기간을 정하여 보고 받음	업무·재무관리상태·시 공상황 등	시정명령 (법 제8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0조)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2	건설업자의 경영실 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법 제49 조 제1항·제3항)	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건설공사의 시공상황		경영실 태 조사 와 결부 된 자료 제출요구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	국토해양부장관	사항별로 3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건설업등록 을 한 날 또는 건 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 제1호의2의 규정 에 의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제 출하는 경우는 1 년)이 경과할 때 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 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법 제81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법 제83조)	신고(등 록 에 결 부 한 신고)
4	건설업 양도신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에게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별지 제14호 건설업양도 신고서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 에 관한 제2조제2항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시행령 제86조, 제87조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확인, 신고의 수리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위탁)		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법 제96조)	(위임·위탁) -건설업양도신고를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률 제 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서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의 처분 을 받고 그 처분 기간 중 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 수자가 확인하 였음을 국토해 양부령 으로 정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바 에 따라 증명하 여야 함 (법 제 17 조 제3항) -전자문 서에 의 한 제출 포함 -건설업 양도 공 고 (법 제 18 조, 시 행규칙 제18조 제4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합병신고(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별지 제15호 법인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	-신고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함 -시·도지사는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i) 법인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병신 고수리 의 연월 일, ii) 이전되 는 건설 업의 업 종, iii)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 거나 신 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대표자의 성명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를 법률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건설업 상속신고 (법 제17조 제4항)	상속인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6호 건설업상속 신고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에 관한 제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시·도 지사는 건설업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법 제96조)	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i)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ii)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iii) 피상속인파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을 건설산 업종합 정보망 에 이를 공고하 여 야 함 (시 행규칙 제20조 제4항) -상속신 고의 경 우 양도 신고를 준용하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록 하 고 있으 나, 신 고의무 자·신 고 방 법·절 차 등을 명확하 게 한다 는 차원 에서 법 률에서 구체적 으로 열 거하는 것이 바 람직함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건설업 폐업신고 (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을 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6호의2 건설업 폐업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신고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법 제2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의3)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건축물 분양신고 (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 5조)	분양사업자	허가권자		별지 제1호 분양신고서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 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의 사본(착공신고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 한함),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 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골 조공사의 2/3 이상을 완 료한 후에 분양하는 경 우에 한함), 분양광고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조)	-신고 -허가권 자는 분 양신고 접수일 부터 5 일 이내 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함 -수리하 는 때에 는 분양 신고필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증을 교부 (법 제 5 조 제 3 항,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2	수의계약 대상 물량 등 신고(시행령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분양사업자	허가권자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분의 규모 등이 최초 분양신고면적(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제1항		-신고 -법률 근거 규정 없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수의계약을 할 대상 물량 등을 신고		

(7) 건축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보고 (법 제87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주 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3조)	보고·자료 제출 요구(행정조사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 는 법 제37조 에 따른 건축 지도원				
2	위법건축공사보고 (법 제25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	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0호 위법건축공 사보고서(전자문서 제출 포함)		보고
3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조사 결과보고 (법 제81조 제4항)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위해의 우 려가 있다고 인 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특별도지사 또 는 시장·군 수·구청장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 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 축물의 구조안전여부를 조 사하게 한 후 그 결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1조 제6호)	보고
4	건축허가의제신고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시	건축물을 건축하 거나 대수선하려 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미리	별지 제6호 건축·대수 선·용도변경신고서(전 자문서 제출 포함)		-신고 -신고한 자가 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12조)				<p>1.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함.</p> <p>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p> <p>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p>		고일부 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지 아니 하면 신 고의 효 력 상실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p> <p>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p> <p>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p>		
5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건축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변경 전	별지 제6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용도변경신고(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108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6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법 제80조)	-신고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변경심의 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108조 제2호)
7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동장·읍장 또는 면장)		별지 제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1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	-신고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 하의 이행강제 금(법 제80조)	공사용 가설건 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 항을 제 출한 경 우에는 가설건 축물 축 조신고 서 제출 생략
8	공사계획 신고(법 제21조 제1항, 시 행규칙 제14조)	건축허가, 건축신 고, 가설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 는 건축주	허가권자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 우로 한함), 시행규칙 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1조)	-신고 -건축물 의 철거 신고시 착공 예 정일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함),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기재한 경우 제외 (법 제21조 제 1 항 단서)
9	건축물 철거 신고 (법 제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철거 전 (철거 예정일 7일 전)	별지 제25호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3조)	신고
10	건축물 재해멸실 신고(법 제36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24조 제2항)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멸실 후 30일 이내	별지 제25호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 제출 포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3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옹벽, 굴뚝 등 공 작물 축조신고(법 제83조 제1항, 시 행령 제118조, 시 행규칙 제41조)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별지 제30호 공작물축조신 고서(전자문서 제출 포함) 공작물등의 배치도, 공작 물등의 구조도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 조), 해당 건 축물에 적용 되는 1제곱미 터의 시가표 준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위반 면 적 을 곱한 금액 이 하의 이행강제 금(법 제80조)	-신고 -기재내 용 확인 후 공작 물 축조 신고필 증 교 부 (시 행규칙 제41조 제2항) -건축허 가 신청 시 공작 물 등의 축조신 고에 관 한 사항 을 제출 한 경우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는 공 작물축 조신고 서 제출 생략
12	가설건축물 존치기 간 연장신고(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			-신고 -시행령 제15조 의3 연 장의제 조 항 있음
13	건축관계자 변경신 고(양수신고)(시행 규칙 제11조)	건축 또는 대수 선에 관한 허가 를 받거나 신고 한 자의 양수인	허가권자	양수사실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 제 출 포함)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 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의 변경사실 증명 서류		-신고 -법률적 근 거 필요함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법인합병신고)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인과 법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허가권자	합병사실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 제출 포함)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 서류		-신고 -법률적 근거 필요함
1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상속신고)(시행규칙 제11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의 상속인	허가권자	사망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 제출 포함)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 서류		-신고 -법률적 근거 필요함 -신고 기간 연장 필요함
16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시행령 제19조 제7항,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 : 착공 예정일부터 7일 건축사보의 배치가	별지 제22호의2		-자료 제출 (보고 의 일 종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변경된 경우 : 변경일부 7일			
17	전산자료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시행령 제 22조의3 제2항)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이용자), 시·도지사(연간 10만 건 이상 시·도 단위 전산자료 이용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연간 5만 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 이용자)	자료제출의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 (행정조사적 성격적 자료 제출·보고의 일종임)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권과 결부한 자료제출 요구임

(8) 건축사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법 제30 조 제1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 청장)			건축사업 무 신고 등의 효 력 상실 처분 을 하거나 1 년 이내의 업 무정지(법 제 28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건축사보 신고(법 제7조 제2항, 시 행규칙 제2조)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	국토해양부장 관(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 는 건축사협회 에 위탁)		별지 제1호 건축사보신 고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 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법 제39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건축사보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	국토해양부장 관(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 는 건축사협회 에 위탁)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호 건축사보 신 상변경신고서 성명 또는 근무처 변경 사항		-신고 -법률에 근거 규 정을 두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건축사 사망신고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제2항)	상속인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및 자격수첩 첨부		신고
5	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건축사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자격증 사본, 사무실보 유증명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법 제39조)	신고
6	외국 건축사면허 소 지자 건축사업무신	외국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	국토해양부장 관(건축사협회)		별지 제17호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진 자			자격(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7	외국 건축사면허 소지자 건축사업무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	외국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신고한 자	국토해양부장관(건축사협회)		별지 제17호의5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법적 근거 필요함
8	건축사업무신고 사항 변경신고(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2조의2)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 (법 제28조)	
9	건축사업무 휴업신고(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2조의2)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휴업 사유 증명서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신고
10	건축사업무 폐업신고(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의2)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폐업 사실 증명 서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신고
11	건축사 업무실적 제출(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1조)	건축사	국토해양부장관(건축사협회)		별지 제14호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자료제출 (보고적 성격) - 임의 규정

(9) 경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보고(법 제15조 제2항)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감독상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보고·자료 제출(행정 조사 적 성격)

(10) 골재채취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 21조 제2항)	골재채취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등록을 취소 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	보고(행정 조사 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허가 제외 골재 채취 보고(법 제22조 제1항 제2호와 결부된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한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		-보고 -법률적 근거 필요함
3	골재채취 분기별 현황보고(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골재채취의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별지 제16호		-보고 -법률적 근거 필요함 -조명은 보고이 나, 조 문에서 는 ‘제 출’ 이 라 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4	골재채취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법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의2)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골재협회)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경과할 때마다(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의 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함),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	신고
5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시	골재채취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골재협회)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5호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6조)				의 감소,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지(법 제19조)	
6	골재채취업 양도 신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골재채취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양도·양수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6호 양도·양수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 서류		신고
7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골재채취업자인 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7호 법인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함),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8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상속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상속일부터 3월 이내	별지 제8호 골재채취업 상속신고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고
9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25조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의7)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7호 골재채취허가내용변경신고서		신고
10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법 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8호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골재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2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			비 보유현황,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함),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취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11	골재채취 변경신고 (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신고 -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정리 필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변경신고에 관한 요건 서식 등 불비

(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보고·자료제출요구 등 (법 제54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이전 그 밖 의 필요한 처 분(법 제55조)	
2	기허가 또는 허가 불요 행위 신고의 공사 또는 사업 착 수신고(법 제9조 제 3항, 시행령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 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 거나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 에 착수한 자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혁신도시개발예 정지구의 지정·고시 가 있는 날부터 30 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 진행상 황, 시행계획		신고

(1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사용 실태 보고(법 제 55조 제1항)	공유수면의 점·사 용허가를 받은 자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사용실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2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 56조 제1항, 시행 령 제70조)	매립면허취득자	매립면허관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3	점용·사용허가사 항 변경신고(법 제 9조, 시행규칙 제 8조)	공유수면의 점·사 용허가를 받은 자	공유수면관리청		별지 제8호 공유수면 점 용·사용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지위승계 신고(법 제16조 제 2항, 시행령 제19 조, 시행규칙 제 14조)	양수인, 상속인, 합 병 후 존속하는 법 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공유수면관리청		별지 제11호 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신고
5	공유수면매립면허 로 인하여 발생한 지위승계신고(법 제43조 제1항, 시 행규칙 제30조)	매립면허로 발생 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 받은 자	매립면허관청		별지 제24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 ·양수(승계)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신고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폐지신고(법 제24조 제1항)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지체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 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사실		보고(명 칭은 신 고이나, 법적 성 격은 보 고임)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자료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시·도지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	6월의 기간 내 에서의 업무	-보고· 자료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출(법 제37조 제1항)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포함)		우,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	출 (행정조사 적 성격) -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2	중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	법인인 중개업자	등록관청		별지 제9호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신고 -신고필증 교부(법 제13조 제4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중개업자의 사용인 고용 신고(법 제 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1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사실		신고
4	중개업자의 사용인 해고 신고(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해고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1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해고사실		신고(퇴사 신고를 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임)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법 제20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11조)	중개업자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이전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2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청을 말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1조)	중개업자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2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신고
7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미리	별지 제13호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신고
8	휴업기간연장신고(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미리	별지 제13호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폐업신고(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미리	별지 제13호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		신고
10	재개신고(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미리	별지 제13호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신고
11	거래당사자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	거래당사자공동/ 중개업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공동신고 : 별지 제21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단독신고 : 별지 제21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신고 -신고필 증 교부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51조), 제27 조 제 1 항 을 위반하여 부 동산 거래 의 신고를 거짓 으로 한 자에 게는 해당 토 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취 득세(취득세 가 비과세· 면제·감경 되는 경우에 는 비과세· 면제·감경 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 납 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당액을 말한 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51조)	
12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거래신고 (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	중개업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21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를	-신고 -신고필 증 교부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 또는 구청장			포함한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1조),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 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51조)	
1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	중개업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1호의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신고 -신고필 증 교부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여 교부한 경우의 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 제6항, 시행령 제23조, 시 행규칙 제17조)		리의 대상인 부 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			: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부 동 산 거 래 의 신고를 거 짓으로 한 자 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한 취 득 세(취 득 세가 비과세· 면 제·감 경 되는 경우에 는 비과세· 면 제·감 경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취 득세의 상당 액을 말한다)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 51조)	
1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이행 신고(시 행령 제24조 제2 항, 시행규칙 제 18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별지 제25호 보증설정신 고서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공탁증서 사본		-신고 -보증보 험 회 사·공 제사업 자 또는 공탁기 관이 보 증사실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 보한 경 우에는 신고 생 략 (시 행 령 제24조 제2항)
15	보증변경신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등록관청		별지 제25호 보증설정 증명서류		신고
16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재설정신고 (시행령 제25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9조)	중개업자	등록관청		별지 제25호 보증설정 증명서류		신고

(15) 교통안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교통안전점검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33조 제4항)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47조 제1항)	일반교통안전진 단기관 또는 특 별교통안전진단 기관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3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 등록사항 변 경신고(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 33조, 시행규칙 제 14조)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8호 일반교통안 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 경신고서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 재지 또는 전문인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6개월 이상 휴업 신고(법 제40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2항)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9호 일반교통안 전진단기관 휴업신고서 휴업증명서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5	재개업신고(법 제 40조 제2항, 시행 령 제33조, 시행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9호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재개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6	폐업신고(법 제40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4조 제2항)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9호 일반교통안 전진단기관 폐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등록말 소의무 (법 제 40 조 제2항)
7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법 제21조 제 1항, 시행령 제16 조, 제17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교통시설 설 치·관리자 및 교 통수단운영자	관할교통 행정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설치·관 리자 : 시행령 별 표 1 제1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 한 사항,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 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자료제 출 (보 고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4조)			하계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통수단운영자: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 위에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사항, 교통안전담당자 지 정에 관한 사항, 안전관 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8	교통안전관리규정 변경제출(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6 조,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교통시설 설 치·관리자 및 교 통수단운영자	관할교통 행정기관 (교통안전공단)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자료 제출 (보고적 성격)
9	교통안전진단보고 서 제출(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	교통 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수단운 영자	관할교통 행정기관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 는 자의 명칭 및 소재 지, 교통안전진단 대상		보고서 제출 (보고적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6조)				의 종류,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성격)
10	특별교통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법 제36조 제2항)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	관할교통행정 기관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		보고서 제출 (보고적 성격)
11	교통사고관련자료 제출(법 제51조 제2항)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관계교통행정 기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운행기록 등 제출 (법 제55조 제2항)	운행기록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등의 보관 의무를 지는 교통수단운영자	교통행정기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자료 제출

(16)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 보고·자료제출(법 제28조)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실태조사 자료 제출 (법 제25조 제3항)	교통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임의적) 자료제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타당성 평가 대행 업무 이행 확인 자료 제출·보고 (법 제28조 제1항)	평가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19조)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복합환승센터의 개 발 및 관리에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69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22조)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3	타당성 평가대행 실 적보고(법 제29조.)	평가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교통투자)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보고서	1천만원 이하의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규칙 제15조)		평가협회)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 공확인서 사본 1부	과태료 (법 제122조)	
4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대행 보고(시 행령 제47조 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 사본		-보고 -대행계 약 체결 의무 및 보고의 무는 법 률에 근 거를 두 는 것 이 바람 직함
5	평가대행자 폐업신 고(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3조)	평가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교통투자 평가협회)		별지 제3호 평가대행자 업무 폐업신고서		신고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안사건 발생 예방, 보안 업무 효율적 수행위한 보고·자료제출(법 제41조 제1항)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보고·자료제출요구 (행정조사적 성격)
2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보고(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9조)	항만시설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	즉시	별지 제22호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보고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먼저 보고하고 사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3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관련 정보제공(법 제32조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	항만시설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	즉시	별지 제22호 항만시설 보안정보제공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정보제공 (보고적 성격)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먼저 제공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위협에 관한 정보		하고 사 후에 해 당 서식 으로 제 공할 수 있 음 (시 행 규 칙 제39조 제3항)
4	국제적 합동보안훈 련 참여 보고(법 제39조 제4항, 시 행규칙 제50조)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 면으로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합동훈련의 결과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보고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37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를 받 은 자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국토해양부장 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 우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을 말 한다), 시·도 지사, 시장 또 는 군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4조 제2항)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 호구역의 지정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결 정 당시 이미 사	도시관리계획 결 정 당시 이미 사 업이나 공사에 착 수한 자(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 사의 중지, 공 작물 등의 개 축 또는 이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고(법 제31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6조)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함)		터 3월 이내		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법 제133조)	
3	재난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신고(법 제56조 제4항 단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1개월 이내	재난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4조)	신고

(20) 궤도운송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궤도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 준수 등 과 관련한 보고(법 제30조 제1항)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500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32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2조 제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2조 제2항)	보고(행 정 조 사 적 성격)
2	정기안전점검 결 과보고(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 17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매 6개월마다	안전점검 및 시설점검 결과	-허가 또는 승 인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전부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법 제12조 제1 항), 6개월 이 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영 업정지(법 제 12조 제2항)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 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 지처분을 갈 음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법 제13조)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중대한 궤도운송 사고 보고(법 제 25조 제1항, 시행 규칙 제22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즉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 한 사고,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내용		보고
4	궤도사업 변경신고 (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2 항, 시행규칙 제4조)	궤도사업자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별지 제2호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사업허가증, 변경사유서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 함)의 변경, 법인인 궤 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 경, 법인인 궤도사업자 의 임원의 변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 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4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전용케도 운영 신고(법 제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화물용 전용케도(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케도, 가설용 포함)를 운영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별지 제5호 전용케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전용케도의 운영 목적, 케도시설의 종류·방식 및 특징, 운영기간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케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 제2항)	신고
6	전용케도 운영 승인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전용케도 운영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별지 제4호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전용케도 운영 승인증, 변경사유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신고
7	케도사업자 지위승계(양도)신고(법 제9조, 시행규칙 제	케도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1호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조)				양도·양수 계약서 사 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 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 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8	제도사업자 법인합 병신고(법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 로 설립되는 법인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13호 법인합병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합병계약서,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 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합병 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궤도사업자 상속신고(법 제9조, 시행규칙 제11조)	궤도사업자의 상속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	별지 제12호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상속사실 증명서류(전자문서 포함)		신고
10	궤도사업 경영 등 위탁신고(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별지 제14호 위탁·수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위탁·수탁 계약서 사본,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탁·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휴지신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미리(단, 케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5호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선로의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휴지기간·사유 및 운영 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케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	신고
12	휴지기간 변경신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미리	별지 제15호 휴지기간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케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제12조)	
13	폐지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미리	별지 제15호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선로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케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제12조)	신고

(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보고/자 료 제출 (행정조 사 적 성격)
2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 보고(법 제11조 제 1항 후단과 결부된 시행령 제15조)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보고 -법률에 서는 대 통령령 이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의 경우 승인의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무를 면 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에서 비 로소 보 고하도 록 정하 는 것은 문제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보고의 무를 부 과하고 자 한다 면, 법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틀에 명 시하여 야 할 것임
3	사업(공사)추진상 황 신고(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제3항, 시행 규칙 제6조)	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 당시 이 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 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 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등 에 관하여 허가 (관계 법령에 의 하여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거 나 신고로 가능 한 경우를 포함 한다)를 받아 그	시장·군수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3호 사업(공사)추 진상황 신고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 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신 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 를 확인할 수 있는 사 진, 배치도 등 공사 또 는 사업관련 도서(토지 의 형질변경 및 토석· 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법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준공검사 받기 전	사업성 분석자료, 개발사업시행 결과, 회계법인의 의견		자료 제출(보고적 성격)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보고·자료제출(법 제22조 제1항)	대중교통운영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4조)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결과 제출 (시행령 제37조 제 1항)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자	시·도지사	매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 행결과		-자료제 출(보고 적 성격) -법률에 의무부 과의 근 거둘필 요 있음 -제출방 법, 절 차 등에 관한 규 정 필 요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분기별 사업시행 결과 제출(시행령 제43조 제1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분기별 지원사업 시행결과		-자료제 출(보고 적 성격) -법률에 의무부 과의 근 거 들 필 요 있음 -제출방 법, 절 차 등에 관한 규 정 필 요함

(24) 도로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상속신고(법 제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상속인	도로관리청(지방 국토관리청장)	상속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상속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 한 허가관련 내역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2	양수신고(법 제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양수인	도로관리청(지방 국토관리청장)	양수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양수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 한 허가관련 내역서, 권 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3	법인합병신고(법 제4조 제2항, 시 행규칙 제2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 라 설립되는 법인	도로관리청(지방 국토관리청장)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합병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 한 허가관련 내역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공사착수신고(시행령 제23조 제4항)	허가권자	관리청	공사착수 후 5일 이내	별지 제17호 공사착수신고서		신고
5	차량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자료 제출(법 제59조 제4항)	차량운전자	관리청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조)	자료 제출(보고적 성격)

(25) 도선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선박운항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법 제29조 제1항, 시행규	도선사 또는 선장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선박운항의 안전 등에 필요한 업무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조사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28조 제1항)						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2	도선료 신고(법 제 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도선사	국토해양부장관	미리	별지 제11호 도선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도선운영협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같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신고
3	도선료 변경신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도선사	국토해양부장관	미리	별지 제11호 도선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도선운영협회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같음), 변경사항 대비표		
4	도선선료 신고(법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도선사	국토해양부장관	미리	별지 제11호 도선선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도선운영협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같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신고
5	도선선료 변경신고(법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도선사	국토해양부장관	미리	별지 제11호 도선선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도선운영협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같음), 변경사항 대비표	(법 제41조)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의 정지(법 제7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8조)	성격)
2	정비사업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7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포함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7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8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3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보고(법 제54조 제2항)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내용		-보고 -고시일은 소유권 취득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기산 점 결정 과 관련 하여 중 요함
4	회계감사결과 보고 (법 제76조)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 닌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회계감사 결과		보고
5	정비구역 안에서 의 행위허가에 대 한 특례로서의 공 사 또는 사업 착 수신고(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 13조의4 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 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시장·군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7) 도시개발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74조 제1항)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나 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대도 시 시장 제외 함)·군수 또는 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사항, 회계검사	타인 토지 출 입의 허가, 시 행자 지정 또 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 소하거나 공 사의 중지, 건 축물 등 이 나 장 애 물 등 의 개축 또는 이 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을 하거나 조 치 명령(법 제 75조), 1천만	-보고· 자료제 출 (행 정조사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85조)	
2	도시개발구역 내 공사신고(법 제9조 제7항, 시행령 제 16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 시 이미 관계 법 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 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 시행계획		-신고 -시행규 칙에 신 고서에 관한 규 정 없음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신고(법 제 27조 제5항, 시행 령 제31조 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 의 지정 당시 이 미 관계법령에 의 하여 허가 등(관 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공사 또는 사업 설계내용		신고
2	입장료 신고(법 제 40조 제3항, 시행 규칙 제22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	공원관리청	입장료를 정한 때	별지 제4호 도시공원입 장료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입장료 변경신고 (법 제40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	관리청	입장료를 변경한 때	별지 제4호 도시공원입 장료변경신고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신고

(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 수립대행실 적 보고(법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 2조의18 제1항)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수립 대행자	국토해양부장 관(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 에 관한 협회)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 수립대행 실적보고서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2	폐업신고(법 제28 조, 시행규칙 제2 조의 16)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수립 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0호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0) 도시철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업무 및 자산상태 보고(법 제25조 제 1항)	도시철도건설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업무 및 자산 상태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9조), 2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과징금 은 영업 정지에 같음함
2	도시철도사업 양 도신고(법 제4조 제 3항)	도시철도사업 면허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미리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9조), 2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법	-신고 -신고자, 신고내 용, 방 법 및 절차 등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9조의2)	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정 없음
3	도시철도사업 합병신고(법 제4조 제3항)	도시철도사업 면허권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미리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9조), 2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신고 -신고자, 신고내 용, 방 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정 없음
4	운임 결정 신고(법 제15조의2 제1항)	도시철도운영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정한 범 위에서) 운임 내역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9조), 2천만원 이하	-신고 -신고방 법 및 절차에 관한 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정 없음
5	운임 변경신고(법 제15조의2 제1항)	도시철도운영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정한 범 위에서) 운임 변경 내역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9조), 2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신고 -신고방 법 및 절차에 관한 규 정 없음

(31)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공사)추진상 황 신고(법 제10)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시장·군수· 구청장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별지 제2호 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		신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4조)	관계 법령에 따 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 능한 경우를 포 함함)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0일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 치도(토지의 형질을 변 경하거나 토석·자갈을 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함)		

(32)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공사)착수 신 고(법 제12조 제3 항, 시행령 제13	마리나항만구역 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시행규칙 별 지 제2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사·시장·군수·구청장				
2	사용료 신고(법 제 26조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미리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		신고
3	준공확인 전 사용 신고(법 제18조 제 4항, 시행령 제21 조, 시행규칙 제 16조)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별지 제8호 준공전사용 신고서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33)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지위승계신고 (법 제2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지방해양항만청장)	지위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8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는 전산 확인 가능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도 첨부 불요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61조 제1항)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7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개발사업대행 계약 체결 보고(시행령 제21조 제2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	물류단지개발사업 대행 계약서 사본		-보고 -대행계약 체결의무 및 보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의무 는 법률 에 근거 를 두는 것이 바 람직함
3	사업양수신고(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양수인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권리·의무 승계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6호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의 서류,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7조)	신고
	법인합병신고(법	합병 후 존속하는	국토해양부장	권리·의무	별지 제7호 법인합병신	300만원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관(시·도지사)	승계일부터 7일 이내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합병계약서의 사본,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 자산의 명세서,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의 서류,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하의 과태료 (법 제67조)	
5	휴업신고(법 제15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12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미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8호 휴업신고서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지	-신고 -법률은 미리 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17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7조)	고하도 록 규정 하고 있 으나, 시행규 칙은 휴 업한날 부터 7 일 이내 로 정하 고 있음
6	폐업신고(법 제15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12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미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8호 폐업신고서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 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7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7조)	-신고 -법률은 미리 신 고하도 록 규정 하고 있 으나, 시행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은 폐업한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폐업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는 무의미함
7	합병 외의 사유에	청산인(파산에 따	국토해양부장	지체없이	별지 제8호 폐업신고서	등록의 취소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한 법인해산신고 (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라 해산한 경우 에는 파산관재인)	관(시·도지사)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6개월 이 내의 영업정 지(법 제17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7조)	

(35) 물류정책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물류현황조사에 필 요한 자료제출(법 제7조 제2항 제3호)	물류기업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2	지역물류현황조사 에 필요한 자료제 출(법 제9조 제2항)	물류기업	시·도지사		지역물류현황조사에 필 요한 자료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성격)
3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위한 자료제 출(법 제11조 제3 항 제3호)	물류기업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 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4	국제물류주선업 양수·도신고(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조)	국제물류주선업 양수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권리·의무 승계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9호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양도·양수계약서의 사 본, 양수인(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 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 류, 양수인이 외국인투 자기업인 경우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조)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권리·의무 승계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0호 상속신고서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6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합병신고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권리·의무 승계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1호 법인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의 사본,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국인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류,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국제물류주선업 사업 휴지신고(법 제46조 제1항, 시 행규칙 제9조)	국제물류주선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미리 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2호 휴지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법률에 서는 미 리 신고 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시행규 칙에서 는 휴지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8	국제물류주선업 사업 폐지신고(법 제46조 제1항, 시 행규칙 제9조)	국제물류주선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미리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2호 폐지신고서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법률에 서는 미 리 신고 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시행규 칙에서 는 휴지 한 날부 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음
9	국제물류주선업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의 신고 (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다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지체없이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2호 해산신고서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	신고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사(사업)착수신고(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4항)						
2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서류제출(법 제50조의5 제1항)	입주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0조)	자료 제 출·출입 조사(행 정 조사 적 성격)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상 필요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보고/자료제출 (법 제42조 제1항)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	국토해양부장관		업무 보고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38조), 징계(법 제42조의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사무소 개설신고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25조)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	별지 제33호 개설신고서 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또는 제64조의3 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함),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소 변경(소속 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 규약 변경 포함)신고(법 제 27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5조)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법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34호 신고사항변경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신고
4	사무소 휴업신고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5조)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법인)	지체없이	별지 제35호 휴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신고
5	사무소 폐업신고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5조)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법인)	지체없이	별지 제35호 폐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감정평가법인 정관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법 제28조 제 4항,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29조)	감정평가법인	국토해양부장관	정관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41호 감정평가법 인정관변경신고서 이유서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 주총회 의사록 사본 1 부, 신·구정관 각 1부		신고
7	감정평가법인 해 산신고(법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 72조, 시행규칙 제 29조)	감정평가법인	국토해양부장관	해산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41호 감정평가법 인해산신고서 이유서 1부, 해산에 관 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신고
8	보험가입 신고(시 행규칙 제32조 제 1항)	감정평가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 명하는 서류		-신고 -신고의 무를 법 률에 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재무제표의 제출 (법 제28조 제9항)	감정평가법인	국토해양부장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 호에 따른 재무제표	인가취소 또 는 2년 이내 의 영업정지 (법 제38조)	신고
10	표준지조사평가보 고서 제출(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 8조)	표준지의 적정가 격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 가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8호 표준주택조 사평가보고서 지역분석조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 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 격평가의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표 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 서,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 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 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		보고서제 출(보고 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 분의 1 지형도),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3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부동산개발업자의 업무·재산관리상 태 보고(법 제18 조 제1항)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등록사업자의 업무/재무 관리상태/경영실태	1년 이내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영업정지 (법 제24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0조)	보고(행 정 조 사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부동산개발업 등 특사업자의 경영실 태 조사를 위한 시 공담당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 여한 자의 부동산 개발 현황 등 자료 제출(법 제18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7조)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부동산개발 현황 등		제3자에 대 한 자 료 제 출(행정 조 사 적 성 격)
3	부동산개발업자 등 의 법 위반행위조 사(법 제21조 제1 항, 시행령 제15조)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소속 공무원		법 위반 행위 조사를 위 한 업무 및 경영상황	1년 이내의 전 부 또는 일 부의 영업정 지(법 제24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0조)	보고· 자 료 제 출(행정 조 사 적 성 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사업실적보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함)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법 제24조), 등록취소(법 제2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0조)	보고
5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변경, 인력변경보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등록사업자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	별지 제15호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법 제24조), 등록취소(법 제25조), 3년	보고(신고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의 변경사항은 매 년 2월말까지)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0조)	
6	부동산개발업 양 도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부동산개발업 등 록사업자(양도 인·양수인)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8호 부동산개발 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 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 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 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 정 내용을 적은 서류, 시 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 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	시정조치(해 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 의 이행, 시 정조치를 받 은 사실의 공 표, 광고물· 간판 등의 철 거 등, 그 밖 에 위반행위 의 시정을 위	-신고 -신고 전 에 공고 하여야 함 (법 제12조)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은 조 제3호에 따른 건 설업자 및 같은 조 제4 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 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22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40조)	
7	부동산개발업 합 병신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에 의 하여 설립되는 법 인의 대표자 공동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9호 법인합병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 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 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시 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시정조치(해 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 의 이행, 시 정조치를 받 은 사실의 공 표, 광고물· 간판 등의 철 거 등, 그 밖 에 위반행위 의 시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	-신고 -등록사 업자인 법인과 등록사 업자가 아닌 법인의 합병에 한함 -신고의 무자를 공동으 로 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2조),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법 제40조)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8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법 제11조, 시 행규칙 제13조)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0호 부동산개발 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 상속인에 관한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 의 서류	시정조치(해 당 위반행위 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광고물 · 간판 등의 철거 등, 그 밖에 위반행 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 법 제22조), 500 만원 이하의	-신고 -상속인 이 법 제 6 조 각 호 어느 하 나의 결 격사유 에 해당 하는 때 에는 3 개월 이 내에 부 동산개 발업을 타인에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과태료(법 제 40조)	계 양도 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5항)
9	부동산 개발업 폐 업신고(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 14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11호 부동산개발 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 포함)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시정조치((해 당 위반행위 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 정 조 치 를 받은 사실의 공표, 광고물 · 간판 등의 철거 등, 그 밖에 위반행 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 법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2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0조)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익 등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업무 또 는 재산 등에 관 한 자료제출·보고 (법 제39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부 동산투자자문회 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업무 또는 재산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4조)	자료 제 출·보 고(행정 조사 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보고(법 제39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업무검사에 한함)		금융감독 관련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4조)	자료 제출·보고(행정조사적 성격)
3	현물출자, 임원변경 등 보고(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부동산투자회사	국토해양부장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임원의 변경,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4조)	-보고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을 명할 수 있음(법 제41조 제2항)
4	투자보고서 제출 (법 제37조, 시행령 제40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결산기 투자보고서 :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 -매분기 투자보고서 : 매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	회사의 개황,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총 수입금액·수입구조 및 수익률,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증권의 소유현황,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함), 차입에 관한 사항, 주가 변동상황, 요약된 대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4조)	-보고서 제출(보고적 성격)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제출 -고시 사항 있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법제3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보고·자료제출(법 제47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포함)의 승		-보고·자료제출 (행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구청장		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 인에 필요한 사항		정조사 적 성격) -일반적 인 입법 례와 달 리 제재 수 단 없음
2	개발사업 대행 보 고(시행령 제20조 제4항)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권자	대행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		-보고 -의무부 과의 근 거법률 필요함
3	공사(사업)착수신 고(법 제12조 제3 항, 시행령 제14조)	허가를 받아야 하 는 행위로서 산업 단지의 지정 및	특별시장· 광 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 첨부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4	신탁계약 체결 서류 제출(시행령 제 24조의2 제2항)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권자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처분계획서		-서류 제출 (보고적 성격) -의무부과의 근거법률 필요함

(41) 선박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선박톤수 측정 대 행 보고(법 제29 조의2 제3항, 시 행규칙 제33조)	대행기관	국토해양부장 관(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지방해양 항만청장)	매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선박총톤수측정 등에 관 한 대행정적		보고
2	선박멸실·침몰, 해체신고(법 제13 조 제4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 호, 시행규칙 제 20조)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 방해양항만청장	멸실침몰, 해체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신고(말 소 등록 신청)
3	국적상실신고(법 제13조 제4항 제1 호, 제22조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 방해양항만청장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신고(말 소 등록 신청)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선박이 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사실 신고(법 제13조 제4항 제1호, 제22조 제3호, 시행규칙 제20조)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이 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신고
5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신고(법 제13조 제4항 제1호, 제22조 제4호, 시행규칙 제20조)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신고
6	국제항해 부종사 신고(법 제13조 제4항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신고
7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선박소유자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별지 제18호 선박멸실등 신고서	200만원 이하의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실 신고(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시행규칙 제20조)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법 제35조)	

(42) 선박안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75조)	선박소유자, 형식 승인을 받은 자, 지정시험기관, 우수사업장의 지정 받은 자,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은 자,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법 제18조 제8항, 제20조제5항, 제23조 제7항, 제24조 제3항, 제63조 제2항,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자료,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	두께 측정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시행령 제12조), 컨테이너 검정 대행기관의 대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어떤 경우에도 보고·자료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자료,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자료	행업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시행령 제13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시행령 제14조),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법 제19조), 우수사업장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법	출을 요구할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보고자의 예측가능성 담보에도움이 됨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1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9조)	
2	선박결함신고(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5조)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별지 제85호 선박결함신고서(긴급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한 구두신고 가능)	거짓으로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신고
3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관련 서류 제출(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 계선사유서 선박검사증서		-자료제출(보고적 성격) -법률사항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43) 선박투자회사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상 필요한 보 고/자료제출(법 제 44조)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국토해양부장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0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법 위반 행위 등 에 관한 보고 또 는 자료 의 제출 로 대상 을 구체 적으로 한 정, 관련 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조치 사항 열 거함
2	금융감독 관련 업 무 자료제출/보고 (법 제45조)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금융위원회, 금 융감독원 원장 (검사의 경우)		금융감독 관련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0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3	자산운영명세 보 고(법 제43조)	선박운영회사	국토해양부장관	6개월마다	자산운영명세		-보고 -보고방 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필 요함
4	해산보고(법 제50조)	선박투자회사의 청산인이나 파산 관재인	국토해양부장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	해산사실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결산서류 및 감사 보고서 제출(법 제 40조 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이사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0조)	자료 제 출(보고 적 성격)

(44) 선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선박운항보고(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5조)	선장	해양수산관청	지체없이	별지 제5호(긴급한 때에 는 구두보고 가능하나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 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선장을 포함한 3 인 이상의 관련자가 서 명날인한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5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6조)	-보고 -법률상 해양수 산관청, 시행규 칙상 지 방해양 항만관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 발생사실,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사실(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함),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사실, 선박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실, 예정항로를 변경한 사실,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사실,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사실		청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통일하거나 위임)
2	채권·채무 상계보고(시행규칙 제18조)	선박소유자	지방해양항만관청	지체없이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채무 상계 내용		-보고 -보고의무를 법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률에 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3	선원근로계약 신고 (법 제43조, 시행규 칙 제20조)	선박소유자	해양수산물관청 (지방해양 항만관청)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	선원근로계약서		-신고 -법률상 해양수 산물관 청, 시 행규 칙상 지 방해양 항만관 청 (→ 지방해 양항만 청장으 로 통일 하거나 위임)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취업규칙 신고(법 제109조, 시행규칙 제57조의3)	선박소유자	해양수산관청 (지방해양 항만청장)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 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 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 우에 한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 출되어 있는 경우 제외) 첨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4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6조)	-신고 -법률상 해양수 산관청, 시행규 칙상 지 방해양 항만청 장 (→ 지방해 양항만 청장으 로 통일 하거나 위임)
5	법 위반사실 신고 (법 제119조, 시행 령 제49조)	선원	해양수산관 청·선원근로 감독관 또는 선 원노동위원회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이 법·『근로기준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 령 위반 사실증명 서류 나 기타 자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6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선원근로감독 관련 보고·자료제출(법 제116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 밖의 관계인	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서류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6조)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4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점포설치 등 보고 (법 제9조)	선주상호보험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점포 설치·이전 또는 폐 쇄 사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2	임원 선임·해임보 고(법 제38조)	선주상호보험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임원 선임·해임(성명, 주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 51조)	선주상호보험조합	금융위원회		검업 금지 규정 위반, 정관 기재사항 위반, 지분공유 금지 규정 위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관련 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관련 사항
4	해산신고(법 제46조)	선주상호보험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해산 사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신고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필요함
5	계산서류 제출(법 제44조, 시행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	국토해양부장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자료제출(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7조)						적 성격) -회계처리 기준 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함

(4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업무 관련 자료제출·조사(법 제9조의6 제3항, 시행령 제11조의4)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나 유지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파악 자료		-자료제출·조사(행정 조사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의 2, 시행규칙 제10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등록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증명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3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11조의 2, 시행규칙 제10조)	1년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별지 제10호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 휴업 증명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 신고(법 제 9조 제5항, 시행령 제11조의2, 시 행규칙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 관을 재개업하려 는 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10호 안전진단전 문기관 재가업신고서 재개업 증명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 11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을 폐업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 관(시·도지사)		별지 제10호 안전진단전 문기관 폐업신고서 폐업 증명서류 및 등록 증 원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6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법 제4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3조)	민간관리주체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자료 제 출(보고 적 성격)
7	안전점검 자체 실 시 실적 제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	관리주체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 및 시·도지사(한 국시설안전공단)	해당 실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3호 안전점검 자체 실시 실적, 유지관리실적(보수·보 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자료제 출(보고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조의2,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4조)				조치실적,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대행 실시 실적(법 제1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 실시한 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한국시설안전공단)	해당 실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3호 안전점검 실적, 유지관리실적(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자료 제출(보고적 성격)
9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자료 제출(법 제11조의3 제2항)	민간관리주체·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한국시설안전공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자료 제출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보고(시행령 제 15조 제3항)	사업시행자	도지사	지체없이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사항		-보고 -법률상 경미한 사항 변 경은 승 인 제외 대상임. 예측가 능성 확 보 차원 에서 시 행령 차 원에서 보고의 무를 부 과하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것은 바 람직하 지 않음 (다만, 직접적 제재수 단 은 없음)
2	공사(사업)착수신 고(법 제12조 제3 항, 시행령 제12 조 제4항)	허가를 받아야 하 는 행위로서 발 전촉진지구의 지 정·고시 당시 이 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는 행위를 하는 자	시장·군수	발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시점 의 공정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및 사진, 배치 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만 첨부함), 설계 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 우에만 해당함)		신고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준공전 사용신고(법 제13조 제4항, 시행 규칙 제7조 제3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 관)지방해양항 만청장)		별지 제9호 준공전사용 신고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시점의 공정(工程)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배치도 등 공사 또 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 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만 첨부한 다), 설계도서(공작물의 설 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	신고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사실 보고(법 제19조 제2항, 시행 령 제11조, 시행규 칙 제41조 제2항)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개략적 상 황 보고 후 별지 제23호 사고보고서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보고 -개인택 시운송 사업자 의 경우 개략적 상황보 고 생략 가능)
2	감독상 필요한 보 고·자료 제출(법 제79조)	운수사업자	국토해양부 장 관 또는 시· 도지사(여객자 동차운수사업 자조합)		사업·자동차의 소유 또 는 사용에 관한 사항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법 제8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	
3	여객자동차 운임·요금 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12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을 결정하여야 함)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음 (법 제8조 제2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 계획 변경(법 제85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94조)	과 비교 하여 변 경신고 의 가능 성 있음)
4	한정면허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자 여객자동차 운임·요금 신고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시 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한정면허(운 행행태가 광역급 행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는 제외함)를 받은 자, 마을버 스운송사업 등록 한 자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운임·요금표, 운임구간 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만 해당함)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도록 명하 거나 노선폐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법 제8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	
5	한정면허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자 여객자동차 운임·요금 변경 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운행행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함)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한 자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만 해당함)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계획 변경 (법 제85조),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94조)	
6	운임·요금 기준 및 효율 산정의 기 초자료 제출(법 제 8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7조, 시 행규칙 제27조 제 1항)	운송사업자(한정 면허를 받은 운 송사업자 제외), 여 객자동차운수사 업자조합, 여객자 동차운수사업자 조합 연합회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시·도 지사)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 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 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 제출		- 자 료 제출 -법 제8 조에서 국토해 양부장 관 또는 시·도 지사가 운임· 요금의 기준과 효율을 정할 수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있는 권 한이 먼 저 수권 되어야 할 것임 이를 근 거로 기 준과 요 율을 정 하기 위 한 서류 제출 요 구가 이 루어져 야 할 것임
7	운송약관 신고(법 제9조, 시행규칙 제 29조)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시·도 지사)		별지 제13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운송약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운송약관 변경신고 (법 제9조, 시행규 칙 제29조)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시·도 지사)		별지 제13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신고서 운송약관, 운송약관 신· 구 대비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신고
9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법 제10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33조)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권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시·도 지사)		별지 제1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도록 명하 거나 노선폐 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 경(법 제85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92조)	
10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미한 사업계획서 변경신고(법 제 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도지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		별지 제15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에 대한 위탁 근거 없음 -경미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서 변경은 등록되어 있음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92조)	(등록과 신고에 실질적인 차이 없고,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11	사업관리 위탁신고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34조)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1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신고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1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5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 (법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운송사업자인 법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19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신고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합병 당사자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p>	<p>부의 정지(법 제49조의6),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p>	<p>아닌 법인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함</p>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법 제 15조, 시행규칙 제 37조)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20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신고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고(법 제 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3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2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고서 사업의 휴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택시운전자격증명(개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신고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법 제 16 조 제3항) -미리 그 취지를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함)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법 제85조),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법 제89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영업소와 일반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법 제16조 제4항)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고(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3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		별지 제2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신고서 사업의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사본(법인인 경우에 한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함), 노선을 정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 선을 표시한 노선도, 택 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 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함)	을 정하여 사 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 차 등이 따르 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법 제85조), 자동 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 동차 등록번 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반납(법 제89 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7	운송가맹점 상호 변경신고(법 제21 조 제4항, 시행규 칙 제44조의2)	운송가맹점으로 가 입한 운송사업자	시·도지사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 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 라 한다) 사본 1부, 시행 규칙 제39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벌점부과 또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명령 (법 제85조)	신고
18	대여약관 신고(법 제31조, 시행규칙 제69조)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시·도지사	자동차대여사업 시작 전까지	별지 제13호 자동차대여 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대여약관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 차 등이 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법 제85조),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92조)	
19	대여약관 변경신 고(법 제31조, 시 행규칙 제69조)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시·도지사		별지 제13호 자동차대여 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 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 차 등이 따 르는 사업계 획 변경명령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92조)	
20	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법 제40조, 시행 규칙 제79조)	터미널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2호 여객자동차터 미널 사용약관 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사용약관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 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 차 등이 따 르는 사업계 획 변경명령 (법 제85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92조)	
21	터미널 사용약관 변경신고(법 제40조, 시행규칙 제79조)	터미널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2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사용약관, 사용약관 신·구 대비표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법 제85조), 1천만원 이하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벌금(법 제 92조)	
22	운송가맹사업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법 제49 조의2 제2항 단 서, 시행규칙 제 93조의5)	운송가맹사업자	시·도지사		별지 제48호의4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 한 서류, 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신고대 상 경미 한 사항 은 대표 자 변경, 영업소의 설치· 이전· 명칭변 경 및 폐지, 운송가 맹점 현 황의 변 경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3	운송가맹약관신고 (법 제49조의4, 시행규칙 제93조의8)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면허권자	시·도지사		별지 제48호의5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 가맹약관 신고서 운송가맹약관		신고
24	운송가맹약관변경 신고(법 제49조의 4, 시행규칙 제93 조의8)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면허권자	시·도지사		별지 제48호의5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 가맹약관 신고서 신·구 운송가맹약관 대 비 서류		신고
25	운송개시 등 신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운송사업자	관할관청	3일 이내	별지 제22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 포함)		-신고 -신고기 간이 지 나치게 단기임 -수권근 거 결여 -운송개 시 이외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에도 운 행개시, 사업계 획의 변 경, 사 업의 양 도·양 수, 법 인의 설 립·합 병 또는 해산, 법 제23 조 제1 항 제1 호에 따 른 개선 명령의 이행등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신고를 법적 근 거도 없 이 시행 규칙 1 개의 조 항에서 규율하 고 있음. 사업의 양도· 양수, 법인의 설립· 합병 또 는 해산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고의 경우는 이미 법 률의 다 른 조항 에서 규 율하고 있는데, 중복규 율의 문 제가 존 재함(서 식에도 문제 있 음). 개 선명령 의 이행 에 관한 서식은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존재하 지 아 니함.
26	사업자 성명 변경 등 신고(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운송사업자	관할관청	14일 이내	별지 제22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 사원 또는 정관 변경,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 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 변경		신고
27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 요한 자료제출(법 제20조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8	예산·결산서 제출(법 제61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제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예산서 :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결산서 :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예산서,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첨부		자료 제출

(5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제20조·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법 제55조)	선박, 유류수령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	-서류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분담유량 보고(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3조, 시행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수령한 자	국토해양부장관(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	별지 제5호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규칙 제8조)			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	(법 제65조)	
3	분담유량 보고(법 제26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8조)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보고
4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4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신고

(51) 임대주택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신고(법 제6조 제2항, 시 행령 제8조 제3 항, 시행규칙 제3 조 제5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 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 지의 시장·군 수 또는 구청 장을 말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신고 -경미한 변경사 항 제 외 규정 있음 -제재수 단 없음
2	기금수탁자 부도 발생 신고(법 제 24조)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	시장·군수· 구청장	지체없이			-신고 -관련 서 식 없음 -제재수 단 없음
3	임대조건신고(법 제26조제1항 전단,	임대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임대조건 신 고서(법 제3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령 제25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6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 i) 임대차계약기간, ii) 임대보증금, iii) 임대료, iv)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제4호)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임대조건 변경신고(법 제26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제4호)	신고
5	임대주택 매각신고(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6조)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9호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신고 -법적 근거 필요함 (신고의무가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규정되어 있음) -신고기한 불분명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임대주택 분양전 환 신고(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8조)	임차인에게 임대주 택을 분양전환하려 는 임대사업자	시장·군수· 구청장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i) 표준임대차계약서 사 본, ii) 분양전환가격 산 정의 근거서류, iii)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 본, iv)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신고 -법적 근 거 필요 함(신고 의무가 시행규 칙에서 비로소 규정되 어 있음)

(52) 자동차관리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시정조치계획 보 고(법 제31조 제4 항, 시행규칙 제	자동차제작자등이 나 부품제작자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통 지 및 공고 5일전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의 차명·형식 및 제작 연월일, 제작결함이 있		-보고 -의무위 반에 대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3조 제1항)			까지	는 구조·장치와 결합원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내용,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시행규칙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가 포함된 보상계획		한 제재수단 없음 -별도의 서식 없음
2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법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 단 없음 -별도의 서 식 없음
3	시정조치 종료 보 고(법 제31조 제4 항, 시행규칙 제 43조 제3항)	자동차제작자등이 나 부품제작자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정조치 종료 후 20일 이내	시정조치 종료사실		-보고 -의무위 반에 대 한 제재 수 단 없음 -별도의 서 식 없음
4	자동차 관리 또는 업무 보고(법 제 72조)	-자동차사용자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국토해양부장 관, 환경부장관 (종합검사와	자동차의 관리업무 를 위하여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	자동차 관리 또는 업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u>지정을 취소</u>	보고(행 정 조사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기계·기구제작자등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명령(법 제21조),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u>지정을 취소하거나</u>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명 령(법 제45조 의3), 택시미 터 전문검정 기관 <u>지정</u> 을 <u>취소</u>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명령 (법 제47조),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84조)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제원 ²⁾ 보고(시행규칙 제39조)	성능시험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월별	제원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		-보고 -제재수단 없으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시행규칙 제39조제4항)

2)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를 말한다.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수출이행 여부 신고 (법 제13조 제8항)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	시·도지사		수출이행 여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신고(사실 파악형) -명확한 신고기한 없음
7	지정정비사업자 휴업신고(법 제45조 제8항, 시행규칙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지사)	휴업예정일 전	별지 제58호의2 지정정비사업자 휴업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신고 -법 제45조 제8항에서는 휴업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88 조는 휴 업 예 정 일 전까지 신고하 도록 규 정하고 있음 -법 제55 조 제 4 항에 따 라 자동 차관리 사업의 휴업 신 고를 한 경우는 제외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 45조 제 8항 단서)
8	지정사업자 폐업 신고(법 제45조 제 8항, 시행규칙 제 88조)	지정정비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지사)	폐업예정일 전	별지 제58호의2 지정정비사업자 폐업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신고 -법 제45조 제8항에서는 폐업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 88조는 폐업 예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정일 전 까지 신 고하도 록 규정 하 고 있음 -제55조 제 4 항 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 업의 폐 업 신고 를 한 경우는 제외함 (법 제 4 5 조 제 8 항 단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법 제48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99조)	이륜자동차를 취 득하여 사용하려 는 자	해당 이륜자동 차의 사용본거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 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 동장 또는 출 장소장을 말함)	사용하기 전	별지 제63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제1항제18호)	신고
10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신고(법 제48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01조)	이륜자동차 소유 자<이륜자동 차 사용신고한 자 중 경사항[이륜자동 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 칭) 또는 주민등	해당 이륜자동 차의 사용본거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 임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65호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제2항제2호)	-신고 -시행규 칙 제 101조 제1항 은 소유 자 변경 과 소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특번호이 있는 자></p>	<p>읍장·면장· 동장 또는 출 장소장을 말함)</p>				<p>권 변경 을 구분 하고 있 음. 소 유자가 아니라 사용자 변경 아 닌지? -이륜차 동차소 유자가 『주민 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 고와 성 명 및 주민등</p>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록번호 의 정정 신고를 한 때에 는 그 변경신 고를 한 것으로 봄. 다 만, 해 당 이륜 자동차 의 사용 본거지 가 이륜 자동차 번호판 에 표시 된 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신고(법 제 4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1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함)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65호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제2항제2호)	-신고 -시행규칙 제 101조 제 1 항 은 소유자 변경 과 소유권 변경 을 구분 하 고 있음 -전자문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로 된 신고 포함
12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법 제48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103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해당 이륜자동 차의 사용본거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 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 동장 또는 출 장소장을 말함)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68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를 제외함),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 외함), 경찰관서에서 발 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 난당한 경우에 한함), 사 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4조 제2항제2호)	-신고 -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 포함

(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활시설운영 현황 보고(시행령 제 27조 제2항)	재활시설운영자	국토해양부장관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함),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보고 -법적 근거 필요
2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의무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서류 제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류 제출(법 제6조 제3항)			을 정함			
3	재활시설운영자의 계획 및 예산제출 (시행령 제28조)	재활시설운영자	국토해양부장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자료 제출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건축부담금 산 정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법 제14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7조 제1항)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사업시행인가 고시 일로부터 3월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 시일로부터 3월 이 내에 시공사자 선 정되지 아니한 경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 요한 자료 별지 제3호 재건축부담 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우는 자료제출 기 한을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 가능, 법률 제14 조 제1항 단서)	시공사, 법 제11조에 따 른 개발비용 추정액, 부 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 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개발비용산정 및 부담금액 공제에 필 요한 내역서 제출 (법 제20조, 시행 규칙 제18조)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부과종료시점부터 1월 이내	별지 제18호 개발비용 산 출내역서 개발비용산정 및 부담금 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 서의 제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 탈·감경하 였거나 면탈· 감경하고 자 한 재건축부 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법 제23조), 내 역서를 제출	자료 제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지 아니하 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 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 부터 1월 이상 2월 미만인 때 : 재 건축 부 담 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해 태기간이 2 월 이상 6월 미만인 때 : 재 건축 부 담 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액 이하, 해태기간이 6월 이상 12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법제24조)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자료 제출(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	별지 제3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 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조)		청장)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시공사,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에 관한 규정 있음 (시행규칙 제 7 조 제2항, 제3항)

(55) 주차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철거 전(해석상)	별지 제8호의12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 i)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		-신고(해석상 사전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11)				증, ii)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iii)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첨부		
2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19조의17 제1호, 시행령 제12조의8,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4항)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13호 기계식주차장기보수업변경신고서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 명령(법 제19조의19),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신고(사후신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등록취소는 과다한 제재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보수업자 휴업신고(법 제19조의 17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5호 휴업신고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 명령(법 제19조의19),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신고
4	보수업자 재개업신고(법 제19조의 17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5호 재개업신고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 명령(법 제19조의19), 50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5	보수업자 폐업신고(법 제19조의 17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5호 폐업신고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 명령(법 제19조의19),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신고 -폐업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는 무의미함
6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2호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시설물		- 자료 제출 - 타법에 따라 설치하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함)		자 하는 경우임 -공사설계도서 및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형도 는 시설 물의 부 지인근 에 부설 주차장 을 설치 하는 경 우에 한 하 여 제출
7	보험계약 체결증명서 제출(법 제19조의6, 시행령 제12조의 7 제3항 전단)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험계약 체결증명서		서류 제출
8	보험계약 변경증명서 제출(법 제19조의6, 시행령 제12조의7 제3항 후단)	보수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험계약 변경증명서		서류 제출

(56) 주택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동주택관리 효율 화 등에 관한 사항 보고·자료제출(법 제59조 제1항, 시 행령 제59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 동주택의 관리사 무소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 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법 제101조), 주 택 관 리 업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54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 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법 제57조)	
2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법 제90조 제1항)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3	감리자 업무수행 상황보고(법 제24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분기별	업무수행상황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	보고
4	감리업무 완료보고(법 제24조 제3)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감리업무 완료시	최종보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항, 시행규칙 제 13조 제4항)					과태료 (법 제101조)	
5	감리원 배치계획 보고(법 제24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3조 제3항)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감리원 배치계획 작성 후	감리원 배치계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보고
6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보고(법 제24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13조 제3항)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배치계획 변경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보고
7	위반사항 발견 보 고(법 제24조 제4 항)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위반사항 반결일부터 7 일 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보고
8	공사착수신고(법 제16조 제8항, 시 행규칙 제12조 제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권자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 착공신고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항)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흠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첨부	(법 제101조)	
9	공동주택 관리행위 신고(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10	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법 제43조 제3항, 시행령	입주자	시장·군수·구청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5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법 제101조)	
11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신고(법 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5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입주자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12	주택관리업 변경 신고(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8호 주택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내용 증명서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13	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법 제55조 제4항, 시행규칙 제32조)	관리사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9호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변경 및 직인 변경신고(법 제55 조 제4항, 시행규 칙 제32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	시장·군수· 구청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9호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 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배치를 증명하는 임 명장 등 사본 1부, 주택 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배치내용 또는 직 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15	주택거래신고(법 제80조의2 제1항, 시행령 지107조의 3, 시행규칙 제49 조의2)	주택소유권을 이 전하는 계약(대가 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 득하는 경우는 제 외함)을 체결한 당 사자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58호의2 주택거 래계약신고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의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 료(법 제101조 의2)	-신고 -시행령 제107 조의3 제5호 에 따른 주택거 래가액 이 6억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함
16	주택거래 변경신고(법 제80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9조의2)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한 당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58호의2 주택거래계약신고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101조의2)	-신고 -시행령 제107조의3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자					이 6억 원 이하 인 주택 거래의 경우에 는 제5 호 의 2 및 제5 호 의 3 을 적 용하지 아니함
17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되기 전 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의 신	주택거래신고지 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 약 중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검인 을 받지 아니한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58호의2 주택거 래계약신고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의 5배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 료(법 제101조 의2)	-신고 -시행령 제107 조의3 제5호 에 따른 주택거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07조의 3, 시행규칙 제49 조의2)	계약 체결 당사자					래가액 이 6억 원 이하 인 주택 거래의 경우에 는 제5 호 의 2 및 제5 호 의 3 을 적용 하지 아 니함
18	등록사업자의 등 록사항 변경신고 (시행령 제11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6조 제4항)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사업등록 수탁기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경미한 사항 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 제외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19	등록사업자 영업 실적 등 제출(법 제15조 제1항, 시 행규칙 제8조)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 사, 주식회사 한 국감정원, 협회, 기금수탁자)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 유현황(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가능)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 첨부		자료 제출
20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 사, 주식회사 한 국감정원, 협회, 기금수탁자)	매월 5일까지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 양실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가능)		- 자 료 제출 -별도의 양 식 없음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전환교통협약 이 행결과 보고(법 제 21조 제3항, 시행 령 제24조)	전환교통협약 체결 당사자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 (전환교통협약의 개요,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 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 량 달성 여부, 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보고(협 약기간 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 통협약 기간의 이행 결 과를 중 합하여 보고하 여야 함)

(58)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추진실적 등 보고·자료제출 (법 제52조, 시행령 제66조의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투 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신고(법 제15 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 수한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개발계획 고시일부 30일 이내	기허가 받은 서류 사본 과 공사 또는 사업의 진 행상황 및 시행계획		신고

(59) 지하수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질검사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지하수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법 제21조 제1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	시장·군수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 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지하수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0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경우 보고·자료제출(법 제34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	시장·군수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발생 등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0조)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지하수오염방지 조치 및 수질측정 결과 보고(법 제16 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시장·군수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보고
4	지하수오염물질 누출 개선조치사항 신고(법 제16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 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시장·군수	지체없이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지하수오 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오염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 정한 지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보고(명 칭은 신 고 이 나 실 질 은 보고임)
5	지하수개발·이용 명의변경신고(법 제7조 제7항, 시행 규칙 제7조 제5항)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시장·군수	명의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의2 지하수개 발·이용허가 명의변경신 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류 첨부		
6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법 제8조 제 1항, 시행령 제13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8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 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미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 는 경우, 농어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 는 경우, 재해 기타 천 재·지변으로 인하여 긴 급히 지하수를 개발·이 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 장·군수가 인정하는 경 우, 전시 기타 비상사태 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 1호 내지 제4호외의 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7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제6항, 시행 규칙 제8조 제5항)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를 한 자	시장·군수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8호 지하수개발· 이용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8	준공신고(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 14조 제2항, 시행 규칙 제9조 제2항)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제7조) 또는 지하 수개발·이용신고 를 한 자(제8조)	시장·군수	준공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11호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 서로 대체할 수 있음), 현장사진 첨부	허가취소 (법 제1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9	유출지하수 이용	지하철·터널 등의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2 유출지	500만원	신고(보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계획수립신고(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하수이용계획신고서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고 또는 자료제출적 성격)
10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법 제9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3)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시장·군수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12호의5 지하수 개발·이용종료신고서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11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법 제9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4)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7 굴착행위신고서	원상복구 (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39조)	
1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법 제9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4)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10 굴착행위변경신고서	원상복구 (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1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법 제9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4)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10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원상복구 (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14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사후관리신고(법 제9조의5, 시행규칙 제9조의5)	지하수개발·이용자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12 사후관리이행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종료신고(법 제9조의5, 시행규 칙 제9조의5)	지하수개발·이용자	시장·군수		별지 제12호의13 사후관 리이행종료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16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수도 신고(법 제24조 제 1항, 시행령 제35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17조 제1항)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	시장·군수	양도·양수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0호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 2호 내지 제6호의 서류)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17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합병신고 (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	시장·군수	합병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0호의2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합병신 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7조 제2항)				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제 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 6호의 서류) 첨부		
18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상속신고(법 제24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 27조 제3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시장·군수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일부더 3월 이내	별지 제31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신고
19	적산유량계 교체 또는 수리신고(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 20조의2)	지하수오염방지 의무자	시장·군수	지체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교체·수리신고		-보고(명칭은 신고이나, 실질은 보고임) -법적 근거 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요함

(60) 철도건설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고·자료제출(법 제24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9조)	보고·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61) 철도안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인증품 생산업 양 도신고(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	인증품 생산업을 양수인	품질인증기관	양수일(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0호 지위승계신 고서 철도용품품질인증서, 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8조, 시행규칙 제 54조 제1항)				도·양수계약서 사본, 그 밖에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법 제81조)	
2	인증품 생산자 상속신고(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 28조, 시행규칙 제 54조)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품질인증기관	상속일(지위승계일) 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0호 지위승계신고서 철도용품품질인증서,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 그 밖에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1조)	신고
3	인증품 생산업 합병신고(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 28조, 시행규칙 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품질인증기관	합병일(지위승계일) 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0호 지위승계신고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1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4조)				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 그 밖에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법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자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사전) 신고 -신고서식 필요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함) 등을 첨부		신고 및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위임(시행령 제46조 제4항)
5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변경신고 (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위를 변경	당해 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8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		

(6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위법사실 보고(법제99조 제1항)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판매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업자,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 성능검사대행업자	청(국토지리정 보원장)			(법 제111조)	-보고 사 유를 구 체적으 로 명시 하고 있 음(- 측 량업자, 지적측 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 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 는 수로 조사를 부실하 게 하여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민원을 발생하 게 한 경우 -판매대 행업자 가 제35 조 제 2 항에 따 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인 정되거나 같은 조 제5 항을 위 반 한 경우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측량업 자 또는 수로사 업자가 제44조 제 2 항 에 따른 측량업 의 등 록기준 또는 제 54조제 2 항 에 따른 수 로사업 의 등록 기준에 미달된 다고 인 정되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우 -성능검 사대행 업자가 성능검 사를 부 실하게 하거나 등록기 준에 미 달된다 고 인정 되는 경우)
2	수로조사 실시 신고(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31조)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양조사원장)	해당 수로조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2호 수로조사 신고서 수로조사 계획서 및 관련 도면 첨부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기 위하여 수로 조사를 하려는 자					
3	측량기술자 근무 처 및 경력 등 신고)법 제40조 제1 항 전단, 시행규 칙 제43조)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국토해양부장관 (측량협회)		별지 제29호 측량기술사 경력신고서 별지 제31호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 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 을 받은 것만 해당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 당자만 첨부), 졸업증명 서(해당자만 첨부), 사진 (3×4센티미터) 1장(경력 신고의 경우만 해당함),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무처 및 경 력등의 신고 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이내의 측량 업무 정지(법 제42조), 거짓 으로 측량기 술자 또는 수 로 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111조)	-신고(임 의 적 신고) -건설기 술관리 법 제2 조 제8 호에 따 른 건설 기술자 인 측량 기술자 와 기술 사범 제 2 조 에 따른 기 술사는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외함 (법 제 40 조 제1항 단서) -필요적 신고로 전환할 필요 있음
4	측량기술자 근무 처 및 경력 등 변 경신고)법 제40조 제1항 후단, 시행 규칙 제43조)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국토해양부장관 (측량협회)		별지 제29호 측량기술사 경력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 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 을 받은 것만 해당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 당자만 첨부), 졸업증명 서(해당자만 첨부), 사진	근무처 및 경 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거짓으 로 한 경우 1년 이내의 측 량업무 정지 (법 제42조), 거짓으로 측	-신고(임 의 적 신고) -건설기 술관리 법 제2 조 제8 호에 따 른 건설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4센티미터) 1장(경력 신고의 경우만 해당함),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 자의 신고를 한 자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기술자 인 측량 기술자 와 기술 사범 제 2 조 에 따른 기 술사는 제외함 (법 제 4 0 조 제 1 항 단서) -필요적 신고로 전환할 필요 있음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44 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측량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립지 리정보원장)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2009년 7 월 1일부터 2011 년 6월 30일까지 의 기간 중 기술 능력 및 장비에 해 당하는 사항을 변 경한 때에는 그 변 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	별지 서식 제41호 측량 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자문서 포함)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소유 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 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 술인력의 명단,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 력증명서	측량업의 등 록을 취소하 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명령 (법 제52조),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6	측량업 영업양도· 양수신고(법 제46 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	측량업 양수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토지 리정보원장)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3호 측량업 영 업양도·양수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1조 제1항 제1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7	측량업 상속신고 (법 제46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	측량업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국토지리정보원장)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4호 측량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 포함)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8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법 제46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국토지리정보원장)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5호 측량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 포함)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측량업 법인 해산 (법 제48조 제1호,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의 청산인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토지 리정보원장)	해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6호 측량업 폐 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10	측량업 폐업신고 (법 제48조 제2호,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폐업한 측량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토지 리정보원장)	폐업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6호 측량업 폐 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11	측량업 휴업신고 (법 제48조 제3호,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휴업한 측량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토지 리정보원장)	휴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7호 측량업 휴 업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 업등록수첩 첨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12	측량업 재개업신 고(법 제48조 제3 호, 시행규칙 제52 조 제1항 제3호)	재개업한 측량업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국토지 리정보원장)	재개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8호 측량업 재 개업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수로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54조 제4항,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수로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53호 수로사업 변경등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수로사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소유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입사한 기술인력의 수로기술경력 증명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14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시·도지사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92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	-신고 -다른 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불이행에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검사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 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함)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법 제96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111조)	비해 제 재수단 과다함
15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법 제93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시·도지사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3호 폐업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신고
16	공공측량 작업계획 서 제출(법 제17조 제2항 전단, 시행 규칙 제21조)	공공측량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지리 정보원장)	공공측량을 하기 30일 전	공공측량의 사업명, 공 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공공측량의		- 자 료 제출 -신청적 성 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작업기간,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있음
17	공공측량 작업변경 계획서 제출(법 제17조 제2항 후단, 시행규칙 제21조)	공공측량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 자료 제출 - 변경계획서 제출 기한 및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규정 필요함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8	공공측량성과 제출 (법 제18조 제1항)	공공측량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공공측량성과의 사본		자료 제출(보고적 성격)
19	수로조사성과 제출 (법 제33조 제1항)	수로조사를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수로조사성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조)	자료 제출(보고적 성격)

(63) 택지개발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제출· 보고(법 제24조)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보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3조)	-자료제출·보고(행정조사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관련 시행령 없어서 실효성 없음
2	사업비 증감 등 보고(법 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5항)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보고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률상 승인 면제 사유인데 (법 제9조 제1항 단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행령에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허가 불필요 행위의 착수 신고(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시장 또는 군수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 첨부		신고
4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서 제출(시행규칙 제4조)	택지개발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	별지 제2호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자료제출(보고적 성격) -법률에서 규정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64) 하천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서류제출(법 제90조)	하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하천관리청(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	보고·자료 제출(행정조사적 성격)
2	허가·승인 등 권리·의무 양수인(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하천법에 따른 허가·승인 등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하천관리청(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양수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허가·승인 등 권 리·의무 상속신고 (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하천법에 따른 허 가·승인 등 권리· 의무를 상속한 자	하 천 관 리 청 (시·도지사, 지 방국토관리청장)	상속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신고
4	허가·승인 등 권 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하천법에 따른 허 가·승인 등 권 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하 천 관 리 청 (시·도지사, 지 방국토관리청장)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65) 항공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초경량비행장치사 고 발생 보고(법 제23조 제7항, 시 행규칙 제6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체없이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 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고가 발생 한 일시 및 장소, 초경 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사고의 경위,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사상 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보고
2	경량항공기 사고 발생 보고(법 제 24조 제7항, 시행 규칙 제68조의8)	경량항공기 조종 사(조종자가 보고 할 수 없는 경우 는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지체없이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 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사고가 발생한 일 시 및 장소, 경량항공기		보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종류 및 등록부호, 사고의 경위,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항공안전 의무보고 (법 제49조의3, 시행규칙 제144조)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 -항공안전장애 :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별지 제63호(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보고방법)		보고
4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49조의4, 시행규칙 제145조)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	국토해양부장관 (안전공단 이사장)		별지 제64호(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보고방법)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상태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5	항공안전 업무보고·서류제출(법제153조)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공항시설·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	보고·서류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설치자 및 관리자, 항공종사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업자,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령(법 제115조의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82조)	
6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신고(법 제23 조 제1항, 시행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안전성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 초경량비행 장치신고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칙 제65조 제1항)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경우만 해당함)	(법 제183조)	
7	초경량비행장치 소유변경신고(법 제23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65조 제5항)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신고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 초경량비행장치변경신고서 용도, 보관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3조의4)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초경량비행장치 소유권 이전신고 (법 제23조의2 제 2항, 시행규칙 제 65조)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29호 초경량비행 장치이전신고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3조의4)	신고
9	초경량비행장치 말 소신고(법 제23조 의2 제3항, 시행규 칙 제65조 제5항)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9호 초경량비행 장치말소신고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3조의4)	신고
10	사용료신고(법 제 86조 제3항, 시행 규칙 제258조)	공공용으로 사용 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설 치자 또는 관리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87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 고서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2조)	신고
11	사용료변경신고(법 제86조 제3항, 시 행규칙 제258조)	공공용으로 사용 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설 치자 또는 관리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87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변 경 신고서 변경사유, 변경 전 사업 수지계산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2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법 제1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2조)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17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신고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첨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법 제115조의3)	신고
13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변경신고(법 제1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2조)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17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 첨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법 제115조의3)	신고
14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 (법 제117조 제1항, 시행령 제45)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20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 -어떤 경우가 인가사항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시행규칙 제 284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129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6조, 제177조)	이 고 , 어떤 경 우가 신 고사항 인지 불 분명함
15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변경신 고(법 제117조 제1 항,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84조)	국제항공운송 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20호 국제항공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	면허를 취소 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 부의 정지명 령(법 제129 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6조, 제177조)	-신고 -어떤 경 우가 인 가사항 이 고 , 어떤 경 우가 신 고사항 인지 불 분명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6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법 제120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290조 제1항)	국내 항공운송사 업자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23호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6조)	신고
17	경미한 운수에 관 한 협정 변경신고 (법 제121조 제1 항, 시행규칙 제 291조)	국내 항공운송사 업자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25호 운수에 관 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 한 협정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18	국내항공운송사업 자 또는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상속)신고(법 제126조 제2항, 시 행규칙 제294조)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28호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인 이 법 제113조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	면허를 취소 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 의 정지명령 (법 제129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서류, 신고인의 국내 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 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함) 첨부		
19	휴업(노선휴지)신 고(법 제127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295조)	국내노선을 운항 하는 국제항공운 송사업자 또는 국 내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29호 휴업(노선 휴지)신고서	면허를 취소 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 부의 정지명령 (법 제129조),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신고
20	폐업(노선폐지)신 고(법 제128조, 시	국내노선을 운항 하는 국제항공운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0호 폐업(노선 폐지)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규칙 제296조)	송사업자, 국내항 공운송사업자				과태료	
21	항공기사용사업자 휴업신고(법 제134 조 제4항)	항공기사용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지체없이			-신고 -서식, 절차 없음
22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법 제139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306조)	상업서류 송달업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상업송달 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예상사업수 지계산서, 외국의 상업 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3개 대 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 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3	상업서류 송달업 변경신고(법 제1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6조)	상업서류 송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상업송달업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내용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신고
24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법 제1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9조)	항공운송 총대리점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신고
25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변경신고(법 제1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9조)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내용(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신고
26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법 제1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도심공항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10조)				미널시설 명세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예상사업수지계산서,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27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법 제139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310조)	도심공항 터미널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별지 제138호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내용(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에 한함)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4조)	신고
28	공항개발사업 투 자자 또는 투자사 업 공사 건설업자 착공신고(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항개발사업 투 자자 또는 투자사 업 공사 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관	공사착공 7일전까지	예정공정표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9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 표지 설치신고(시 행규칙 제251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 간표지 설치자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85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 간표지 설치신고서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 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도면, 항 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 장애 주간표지 설치사진 (전체적 위치를 나타내 는 것)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30	소형항공운송사업 자 또는 항공기사 용사업자 등록사 항 변경신고(시행 규칙 제300조)	소형 항공운송사 업자 또는 항공 기사용사업자	지방항공청장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34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31	항공기사고 지원 계획서 제출(법 제	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신고 -관련 서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9조의2)						식, 제출기한 등 필요함

(6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안검색 실패 등 보고(법 제19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11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즉시	보안검색 실패 사실		보고

(6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한 집행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5조)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민간항공단체	국토해양부장관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한 집행보고서		-자료제출(보고적 성격)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위임

(68) 향로표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법 제20조 제1항)	사실향로표지의 소유자, 향로표지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향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자료제출(행정)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44조)	조사적 성격)
2	항로표지 설치신고(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선박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4호 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제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신고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이 다른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선박은 제외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사설항로표지 양도 신고(법 제13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3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수산청장)		별지 제9호 사설항로표 지 양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 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 인인 경우만 해당함)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4	사설항로표지 위탁 신고(법 제13조 제 4항, 시행규칙 제 14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수산청장)		별지 제10호 사설항로표 지 위탁관리 신고서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 의 현황조서, 사설항로 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 하는 자의 명단과 그 자 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위탁관리계약서 사 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5	항로표지 위탁관리 업 상속신고(법 제 16조 제3항, 시행규 칙 제19조 제1호)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수산청장)	지위승계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6호 상속인사업 승계신고서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법 제 16조 제3항,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양수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위승계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7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합병신고(법 제 16조 제3항,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위승계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 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19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신고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명령 (법 제18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9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휴지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19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휴지신고소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18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신고
10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재개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19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재개신고소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정하여 업 무의 정지명 령(법 제18조),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11	항로표지 위탁관 리업 폐지신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수산청장)		별지 제19호 항로표지 위 탁관리업 폐지신고소	항로표지 위 탁 관리업 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 무의 정지명 령(법 제18조),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4조)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사실항로표지 폐지신고(법 제22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3조)	사실항로표지 소유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사유서, 별지 제2호 항로표지 현황조서, 사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신고
13	사실항로표지 현상변경신고(법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4조)	사실항로표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20호 사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별지 제21호 항로표지 현상변경조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신고
14	항로표지 훼손신고(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선박의 선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이나 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수산청장)	지체없이	유·무선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장소, 훼손내용 및 조치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69) 항만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보고(법 제 73조 제1항)	허가·승인을 받 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 설운영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보고(행 정조사 적 성격)
2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법 제10조 제4 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비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신고
3	시설장비 설치· 철거신고(법 제24 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시설장비관리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신고 -신고기 한, 신 고절차 등 필 요함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항만시설 사용신고 (법 제30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을 사용하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신고 -신고기 한, 신 고절차 등 필 요함
5	항만시설 사용료 요 율, 징수방법 신고 (법 제30조 제7항)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미리			-신고 -신고절 차 등 필요함
6	귀속 항만시설 무 상사용신고(시행 령 제20조 제1항)	비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	미리			-신고 -신고절 차 등 필요함
7	항만공사로 조성 되거나 설치된 토 지 또는 항만시설 준공 전 사용신고	비관리청	국토해양부장 관(지방해양항 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8호 준공전사용 신고서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12조 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법 제98조)	
8	항만재개발사업으 로 조성되거나 설 치된 토지 또는 시설 준공 전 사 용신고(법 제61조 제5항 단서, 시행 령 제70조, 시행 규칙 제26조)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9호 준공전사용 신고서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 함된 사용계획서, 사용 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 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 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 리자의 의견서, 해당 토 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 계 도면 및 사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신고
9	기허가 또는 허가 불요 행위 신고의 공사 또는 사업착 수신고(법 제84조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을 받거나 해당 사업구 역이 지정·고시된 날부 터 30일 이내	별지 제24호 공사 등 착 수신고서 공사 또는 사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항, 시행령 제 83조, 시행규칙 제 30조)		수·구청장			업의 진행상 황과 시행계 획 첨부	

(70) 항만운송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운임 및 요금신고 (법 제10조, 시행 규칙 제15조 제1 항, 제15조의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방해양항만 청장 또는 시·도지사	미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신고
2	운임 및 요금변경 신고(법 제10조, 시 행규칙 제15조 제1 항, 제15조의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방해양항만 청장 또는 시·도지사	미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운임 및 요금신고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검수사업·검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미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신고
4	운임 및 요금변경 신고(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검수사업·검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미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신고
5	물품공급업 신고(법 제26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6조)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14호의2 물품공급업신고서 사업계획서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신고
6	일시적 영업행위신고(법 제2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4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지방해양항만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신고

(71) 해상교통안전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양사고 방지, 해상교통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의23)	선장, 선박소유자, 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진단대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명령(법 제6조의7제1항),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 정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명령(법 제 21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76조제2항)	
2	대행업무 보고(법 제12조 제6항, 시 행규칙 제3조의12)	대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매반기 종료일부 10일 이내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나 일부 정지 명령(법 제12 조 제5항)	보고
3	해양사고의 발생사 실, 조치사실 신고 (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해양경찰서장 이나 지방해양 항만청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6조 제2항)	명칭은 신고이 나 법적 성격은 보고임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법 제19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3조의20)	안전관리대행업 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3호 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정관, 양수인 의 양수에 관한 주주총 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 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 서 첨부	안전관리대 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전 부나 일부 정 지명령(법 제 21조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76조제2항)	신고
5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법 제19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3조의20)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 또는 합 병에 의하여 설 립되는 법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4호 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합병하는 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 한 주주총회의사록·사	안전관리대 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전 부나 일부 정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 원의 동의서 첨부	지명령(법 제 21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76조 제2항)	
6	진단대행업자 휴업 신고(법 제20조, 시 행규칙 제3조의21)	진단대행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5호 진단대행업 휴업신고서	안 전 관 리 대 행 업 등 록 을 취 소 하 거 나 6 개 월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 여 영 업 의 전 부 나 일 부 정 지 명 령 (법 제 21 조 제 1 항), 300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법 제 76 조 제 2 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진단대행업자 폐업 신고(법 제20조, 시 행규칙 제3조의21)	진단대행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5호 진단대행업 폐업신고서	안 전 관 리 대 행 업 등 록 을 취 소 하 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전 부나 일부 정 지명령(법 제 21조제1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76조제2항)	신고
8	안전관리대행업자 휴업신고(법 제20 조, 시행규칙 제3 조의21)	안전관리대행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5호 안전관리대 행업 휴업신고서	안 전 관 리 대 행 업 등 록 을 취 소 하 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전 부나 일부 정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명령(법 제 21조 제 1 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76조 제 2 항)	
9	안전관리대행업자 폐업신고(법 제20 조, 시행규칙 제3 조의21)	안전관리대행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5호 안전관리대 행업 폐업신고서	안 전 관 리 대 행 업 등 록 을 취 소 하 거 나 6 개 월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 여 영 업 의 전 부 나 일 부 정 지 명 령 (법 제 21 조 제 1 항), 300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법 제 76 조 제 2 항)	신고

(72) 해양과학조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외국인등 해양과학 조사 참여결과 보 고(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외국인등의 해양과 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73) 해양생태계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등 신고 (법 제20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허가를 받고 보 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채취등 을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	별지 제9호 또는 별지 제11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제2항)	명칭은 신고이 나, 법적 성격을 보고임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보호대상해양생물 보관신고(법 제20 조 제5항, 시행규 칙 제21조)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 로 정하여지는 경 우 1년 이내	별지 제14호 보호대상해 양생물보관신고서 보관하고 있는 보호4대 상해양생물의 사진, 보 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 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 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제2항)	명칭은 신고이 나, 법적 성격을 보고임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 요한 자료제출(법 제38조 제1항)	해양심층수 관련 업의 사업자 또 는 관계인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지방해 양항만청장)				자료 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해양심층수 취수량 보고(시행령 제29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37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매분기의 해양심 층수 취수량을 분 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7호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계량기 측정기록표,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의 감 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 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 거서류(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 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함)		-보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3	판매실적, 해양심 층수 사용실적 보 고(시행령 제37조 제2항, 시행규칙 제 40조)	제조업자등과 해 양심층수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2호 먹는해양심 층수 판매실적 보고서, 별지 제33호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보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사업개시 신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6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2호 사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5	휴업신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6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2호 휴업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6	재개업신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6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2호 재개업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7	폐업신고(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6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2호 폐업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58조 제1항)	
8	지위승계신고(법 제2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지위승계인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3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9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휴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시·도지사	휴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휴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0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재개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시·도지사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재개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1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폐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시·도지사	폐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폐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먹는해양심층수수 입업자 휴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시·도지사	휴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휴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3	먹는해양심층수수 입업자 재개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시·도지사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재개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4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폐업신고 (법 제27조 제4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시·도지사	폐업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12호 폐업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5	먹는해양심층수제조 업자 영업승계신고 (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29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3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 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6	먹는해양심층수수입 업자 영업승계신고 (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29조)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시·도지사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3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 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신고
17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의 수량·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8조)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자료 제출
18	제조업자 등 평균단 가계산서 제출(시행 령 제34조, 시행규 칙 제39조 제1항)	제조업자 등	국토해양부장관	다음 해 1월 말까지	별지 제30호 평균단가계 산서(전자문서에 의한 제 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 서 류 제 출 -법적 근 거 필 요함
19	해양심층수개발업 자 등 평균단가계 산서 제출(시행령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다음 해 1월 말까지	별지 제31호 톤당 평균 단가계산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 서 류 제 출 -법적 근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35조,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거 필요함

(75) 해양환경관리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15조 제2항,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76조)	해양시설의 소유자, 선박급유업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제2항)	-보고·자료제출(행정조사적 성격) -보고·자료제출의 대상 등을 구분하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여 규 올함
2	지도·감독상 필요 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115조 제3항, 시행령 제89조 제4 항, 시행규칙 제 76조)	해양시설의 소유 자, 폐기물해양배 출업·해양오염 방지업·유창청 소업을 영위하는 자, 폐기물위탁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제2항)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보고· 자료제 출의 대 상 등을 구분하 여 규 올함
3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실적보고(시 행령 제64조 제3 항, 시행규칙 제 54조의2)	해역이용영향평 가대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1호의2 해역이 용영향평가대행실적 보 고서		-보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해양시설 신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 포함,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함)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해양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함),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함)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2항)	신고
5	해양시설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 포함,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함)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해양시설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음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법 제63조 제1 항, 시행령 제47 조, 시행규칙 제 29조)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이 적재된 선 박의 선장 또는 해 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 박 또는 해양시설 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오염물질의 배출원 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배출된 오 염물질을 발견한 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지체없이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등으로 신고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 시·장소 및 원인, 배출 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 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 급조치상황, 사고선박 또 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해면상태 및 기상 상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129조 제1항)	명칭은 신고이 나, 법적 성격은 보고임
7	해양환경관리업 승계신고(법 제74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 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	국토해양부(해 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3호 해양환경관리 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2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폐기물 위탁신고 (법 제76조 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폐기물해양배출 업자에게 폐기물 을 위탁·처리하 려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별지 제44호 폐기물 위 탁·처리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 포함) 위탁·처리하려는 폐기 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 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저장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 한 경우로 한정함),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 른 배출시설설치신고증 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 (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 정함), 영 제35조에 따 른 전문검사기관이 발급 한 검사성적서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2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폐기물 위탁 중요 사항 변경신고(법 제76조 제1항, 시행 규칙 제45조 제5항)	폐기물 위탁신고를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별지 제44호 폐기물 위 탁·처리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 명서,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 74조 제1항 제4호의 검 사성적서(제4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함)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2항)	신고
10	선박해체신고(법 제111조 제1항, 시 행규칙 제73조)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작업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69호 선박해체 해양 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작업계획서, 해체장소 사 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 서류, 해체할 선박의 권 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오염물질의 처리실 적서 첨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제2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1	선박해체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3조)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별지 제69호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서 작업계획서, 해체장소 사 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 서류, 해체할 선박의 권 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오염물질의 처리실 적서 첨부		-신고 -변경신 고에 관 한 법률 적 근거 없음
12	해양시설 폐업신 고(시행규칙 제17 조 제4항)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	지방해양항만 청장 또는 시·도지사		별지 제16호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신고 -법적 근 거 필 요함
13	해양환경관리업자 처리실적서 제출 (법 제7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매월 10일까지	폐기물해양배출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 출대장 사본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4항)	자료 제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4	폐기물인계·인수 서 제출(법 제72 조 제3항, 시행규 칙 제41조)	폐기물해양 배출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0호부터 제42호 폐기물 인계·인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제4항)	서류 제출

(76) 해외건설촉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외공사상황보고 (법 제13조, 시행 령 제17조)	해외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제1항)	보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해외건설업 신고 (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 항,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해외건설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별지 제1호 해외건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신고
3	해외건설업 변경 신고(법 제6조 제 1항, 시행령 제6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	해외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 해외건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 포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제1항)	신고
4	현지법인 설립 등 신고(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 행규칙 제8조)	해외건설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재외공관 의 장(협회)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7호 현지법인설 립(인수)신고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제1항)	-명칭은 신고나 실질은 보고임

(77) 해운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필요한 자료제출· 보고(법 제50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27조)	해운업자 또는 화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여객운송사 업 면허 또 는 인가를 취 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 나 <u>3천만원</u> <u>이하의 과징</u> <u>금 부과</u> (법 제 19조 제1항), 해운중개업	-보고· 자료제 출(행정 조사적 성격) -보고· 자료제 출의 대 상을 법 률에 명 시적으 로 언급 하 고 있음 -과징금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u>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u> (법 제 35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부과
2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호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첨부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	
3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 변경신고(법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외국해상여객 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제19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9조 제1항)	
4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운임·요금신고 (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미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별지 제6호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첨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 :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	-신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지 제7호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첨부	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제19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9조 제1항)	의 운임과 요금이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법제11조 제2항)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해상여객운송사업 자 운임·요금변경 신고(법 제11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10조)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미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별 지 제6호 내항여객운송 사업 운임·요금변경신 고서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 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구간제(區間制) 운 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 간을 표시한 서류, 운임 과 요금의 신·구대비표 첨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 : 별지 제7호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 는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 운임·요금신고서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	여객운송사 업 면허 또 는 인가를 취 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 나 3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9 조 제1항),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59조 제1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비표 첨부		
6	사업계획 변경신고 (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여객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미리	별지 제8호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첨부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9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59조 제1항)	
7	휴업신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여객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0호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신고서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신고 -휴업신고기간 제한(6개월이내) 있음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과태료(법 제 59조 제1항)	
8	폐업신고(법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여객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 항만청장)		별지 제10호 해상여객운 송사업 폐업신고서	여객운송사 업 면허 또 는 인가를 취 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 나 3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9 조 제1항),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59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신고(법 제2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미리	별지 제13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사업계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10	외국인 국내지사 설치신고(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호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11	외국인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5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외국인 운항계획 신고(법 제28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20조 제2항)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 항과 외국항 사 이에서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경영 하는 외국인	국토해양부장관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운항계획 (협약)신고서 별지 제16호 선박운항계 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13	외국인 운항계획 변경신고(법 제28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20조 제2항)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 항과 외국항 사 이에서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경영 하는 외국인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5호 운항변경계 획(협약)신고서 별지 제16호 선박운항계 획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14	운임협약신고(법 제29조 제2항, 시행 규칙 제20조 제3항)	외항화물운송사업 자(국내항과 외국 항 사이 또는 외 국항과 외국항 사 이에서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경영 하는 외국인 포함)	국토해양부장관	협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5호 운항계획 (협약)신고서에 협약서(번 역문 포함) 및 협약 개요 서 첨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운항관리규정 제출 (법 제21조 제1항)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신고
16	운항관리규정 변경제출(법 제21조 제1항)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서장)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신고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업무와 재산 등 보고(법 제47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보고(행정조사적 성격)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운수사업자 등 사업이나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서류제출(법 제61조 제1항)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보고·서류제출(행정조사적 성격)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별지 제8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4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신고(법 제3조 제7항,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마다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10호의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신고 <u>-변경사항만 신고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u>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지를 명령하 거나 감차조 치(법 제19조 제1항)	
5	운임 및 요금신고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시 행규칙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연합회)	미리	별지 제11호 운송사업운 임 및 요금신고서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 한 것을 말함), 운임· 요금표,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신고의 무자가 법률상 명확하 게 규정 되는 것 이 바람 직함 -연합회 에 대한 대리 근 거가 시 행규칙 에 있음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운임 및 요금변경 신고(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별지 제11호 운송사업운 임 및 요금신고서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 한 것을 말함), 운임· 요금표,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신고 -변경신 고에 관 한 명시 적 수권 근 거 없음 -신고의 무자가 법률상 명확하 게 규정 되는 것 이 바람 직함 -연합회 에 대한 대리 근 거가 시 행규칙 에 있음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운송약관신고(법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운송약관신고서 운송약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신고기간이 명시될 필요 있음
8	운송약관변경신고(법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12호 운송약관변경신고서 운송약관,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신고기간이 명시될 필요 있음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양수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16호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한함),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 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다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함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별지 제17호 법인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의 경우에 한함),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 는 서류		
11	상속신고(법 제17 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5조)	상속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	별지 제18호 상속신고서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 의서, 피상속인이 사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신고인이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12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휴업신고(법 제 18조 제1항, 시행규 칙 제26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미리	별지 제19호 사업휴지신 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신고 -법률상 휴업신 고, 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행규칙 상 휴지 신고
13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폐업신고(법 제18조 제1항, 시 행규칙 제26조 제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미리	별지 제19호 사업폐지신 고서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에 한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법률상 폐업신 고, 시 행규칙 상 폐지 신고
14	화물자동차 운송주 선사업허가 변경신 고(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별지 제27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 경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15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법 제29조 제2항, 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32호의3 화물자 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 항변경신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I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행령 제9조의3, 시행규칙 제41조의5)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	시·도지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	별지 제34호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포함)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자	시·도지사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4호 변경신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0조 제1항)	신고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	2	·	·	2	문화체육 관광부	제9932호	2010.1.1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2	5	·	8	문화체육 관광부	제9928호	2010.1.1	
3	경륜·경정법	1	·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685호	2009.5.21	
4	공연법	·	1	2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11호	2010.3.17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	관광기본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741호	2007.12.21	해당없음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469호	2009.3.5	
7	관광진흥법	2	2	6	·	10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12호	2010.3.17	
8	국민체육진흥법	1	2	·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9976호	2010.1.27	
9	국어기본법	·	1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491호	2009.3.18	
10	국제회의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1	2	·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9492호	2009.3.18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3	·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9785호	2009.7.31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2	대한민국예술원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13	도서관법	·	2	·	·	2	문화체육 관광부	제9528호	2009.3.25	
14	독서문화진흥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9470호	2009.3.5	해당없음
1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10호	2010.3.17	해당없음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2	2	·	7	문화체육 관광부	제9677호	2009.5.21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18	문화예술진흥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46호	2008.1.17	해당없음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	1	·	2	문화체육 관광부	제9763호	2009.6.9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21	스포츠산업 진흥법	1	·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2	·	5	문화체육 관광부	제9974호	2010.1.25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2	·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13호	2010.3.17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425호	2009.2.6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5	영상진흥기본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744호	2007.12.21	해당없음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7	·	10	문화체육 관광부	제9657호	2009.5.8	
2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9932호	2010.1.18	해당없음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3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15호	2010.3.17	
2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1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472호	2009.3.5	
3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3	·	5	문화체육 관광부	제9098호	2008.6.5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1	저작권법	1	1	1	·	3	문화체육 관광부	제9785호	2009.7.31	
32	전통무예진흥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9006호	2008.3.28	해당없음
3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9473호	2009.3.5	
34	지방문화원진흥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1	·	·	1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3	2	·	5	문화체육 관광부	제9494호	2009.3.18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1	1	·	2	문화체육 관광부	제9932호	2010.1.18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10107호	2010.3.17	해당없음
39	포물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2	·	·	2	문화체육 관광부	제9789호	2009.10.9	
40	한국관광공사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9474호	2009.3.5	해당없음
4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없음
42	향교재산법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제9215호	2008.12.26	해당없음
	계	14	39	36	0	89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법 제30조)	시행자	시장	지체 없이	공사를 완료한 때 공사 준공보고서의 제출		자료제 출
2	자료의 제공요청 (법 제17조)	행정기관·공공 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조직위원회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 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자료제 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후관리(제31조)	게임물 관련 사업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 청장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보고
2	등급분류(법 제21 조, 시행규칙 제9 조의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	등급위원회	24시간 이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의 내용 수정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신고 -등급위 원회규 정으로 정하는 신고서 에 수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료를 첨부하 여 등급 위원회 에 제출
3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법 제26 조, 시행규칙 제17 조, 제20조)	일반 게임제공업 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인 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등 록을 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때 신고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 조), 허가·등 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명 령(법 제35조 제2항)	-신고 -별지 제 8호 서 식의 복 합유통 게임제 공업 신 고 서 첨부
4	영업의 승계(법 제29 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21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 승계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신고 -별지 제 17호 서 식의 신 고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폐업 및 직권말소 (법 제30조, 시행 규칙 제22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신고 -별지 제 18호서 식의 폐 업신고 서 허가 증, 등 록증 또 는 신고 증 을 첨부
6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법 제22조)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등급위원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요구		자료 제출
7	게임물 운영정보표 시장치의 인정 등 (시행규칙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작 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	등급위원회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 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 의 사업계획서, 정관,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 는 서류의 제출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3) 경륜·경정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명령·처분 및 검 사(법 제23조)	경주사업자(경주 의 시행허가를 받 은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경주사업에 관한 보고 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5조 제1항)	보고 명령
2	경륜 및 경정의 시 행(시행령 제4조)	경주사업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경주개최계획서의 제출		자료 제출

(4) 공연법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해예방조치(법 제 11조, 시행령 제9조)	공연장운영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명령(법 제33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신고 -공연장 등록신 청과 함께
2	재해예방조치(법 제11조, 시행령 제 9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명	신고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는 당해 시설이 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령(법 제33조 제1항),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제1항)	
3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공연장운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의 제출		자료 제출

(5) 관광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당없음.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기금대여상황 보 고(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조)	한국산업은행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기금대여상황의 보고		보고

(7) 관광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법 제 78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 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 한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3 조), 등록등 또	보고 /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5조제1항)	
2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시행령 제62조)	보조금을 받은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사업추진실적의 보고		보고
3	허가와 신고(법 제 5조, 시행규칙 제8 조, 제9조, 제10조)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카지노업만 해당한다),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신고 -별지 제 15호서 식의 카 지노업 변경허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 한다), 상호 또는 영업소 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신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 35 조 제 1 항), 카지노업 자의 2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제83조), 유원 시설업자의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84조)	가신청 서 또는 변경신 고서, 별지 제 16호서 식의 유 원시설 업 허가사항 변경신 고서
4	허가와 신고(법 제5 조, 시행규칙 제11 조, 제12조, 제13조)	법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유원시설업의 신고와 중 요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신고 -유원시 설업의 신고를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을 경영하려는 자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제 35 조 제 1 항),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 84 조)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 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별지 제 19호서식의 기타유원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업 신고사 항 변경 신고서
5	관광사업의 양수 등 (법 제8조, 제16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	등록등 또는 사업 계획 의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 35 조 제 1 항), 카지노사 업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법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23호 서식의 관광사 업 양수 (지 위 승 계) 신고서 문화체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83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카지 노사업자는 제외, 법 제86 조제1항)	육관광 부장관, 특별자 치도지 사·시 장·군 수·구 청장 또 는 지역 별 관광 협회장 에 계 제출
6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법 제26조, 시행 규칙 제35조)	카지노사업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미리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 업 방법 및 배당금 등의 신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32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신고		-신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8	사업계획의 변경 등(시행령 제63조)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신고		신고
9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으로의 납부금 등 (시행령 제30조)	카지노사업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 무제표의 제출		신고
11	조건부 영업허가(법 제31조, 법 제5조, 시 행령 제31조, 시행규 칙 제38조, 제39조)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를 갖춘 경우 그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자료 제출
12	여행계약 등(법 제 14조, 시행규칙 제 21조의2)	여행업자	여행자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35조제1항)	자료 제출

(8) 국민체육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보고·검사 등(법 제44조)	체육회, 장애인체 육회, 진흥공단, 수 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		업무에 관한 보고 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5조 제3항)	보고 명령
2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법 제31조)	수탁사업자	서울올림픽기 념 국민체육진 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 의 제출		- 자 료 제출 -매 사업 연도가 끝난 후 2 개 월 이내
3	부가금의 징수(법 제 23조, 시행령 제25조)	부가금의 징수 대 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	기금관리기관	부가금수납명세서 는 매월 말일까지 의 수납 명세를 기 록하여 다음 달 10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 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 의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5조 제1항)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일까지, 부가금수 납부 사본은 기금 관리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 그 요구 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9) 국어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실태조사 등(법 제 9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 제출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재정지원(법 제16 조, 시행령 제15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사업종료후 1월 이내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 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실적을 보고		보고
2	국제회의 유치·개 최 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 개최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자료 제출
3	국제회의 정보의 유 통 촉진(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 요구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법 제22조)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뉴스통신진흥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 재한 보고서 제출		자료 제출
2	결격사유 등(법 제 9조)	뉴스통신사업을 하 거나 뉴스통신사업 을 하고자 하는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제5조·제 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제1항)	자료 제출
3	경영목표와 운영 계획 및 예산(법 제 21조)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뉴스진흥회	매년 10월 31일까지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 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 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		자료 제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제출, 운영계획의 제출		

(12) 도서관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도서관자료의 납본(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	국립중앙도서관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	도서관자료 납본서의 제출	해당 도서관 자료 정가(그 도서관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도	- 자료 제출 - 별지 제 9 호 서식의 도서관자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47조 제1항)	료 납본서, 별지 제9호의 2 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2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	시·군·구청장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폐관신고서의 제출		- 자료 제출 -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 2 서식 및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지 제 14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해산(법 제52조)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보고		보고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감독·검사 등(법 제55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 제출
3	공모문화산업전문 회사에 관한 특례 (법 제56조의 2)	공모문화산업 전문 회사 및 사업관 리자	금융위원회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주주·사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명령		보고 명령 자료 제출
4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시행령 제20 조의 5)	우수문화프로젝 트 및 우수문화사 업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 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보고 또는 자 료제출 요구		보고 / 자료 제출
5	유통 전문 회사의 설립·지원(법 제 14조, 시행규칙 제 6조)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받으려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				-신고 -별지 제 3 호 서 식의 유통전문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회사 신고서
6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하려는 자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는 별지 제 2 호 서 식 , 별지 제 2 호 서 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 신고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7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법 제8조, 시 행령 제8조, 시행 규칙 제4조)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해당 회계연도의 문화산 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제출		- 자 료 제출 -법 제2 조제10 호에 따 른 문화 산업전 문투자 조합(이 하“투자 조합”이 라 한다) 의 결산 서 공인 회계사 의 감사 의견서 첨부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폐관 신고(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폐관 즉시	폐관신고		-신고 -폐관신고서는 별 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2	시정 요구와 정관(법 제26조)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시행령 제13조)	인가받은 사업자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주요 사업계획 서 및 수지계산서, 회칙 또는 정관, 가입 회원사 명부 변경 보고		보고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폐업 및 직권말소 (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을 폐쇄한 경우 폐업 신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신고 -별지 제 7 호 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1항)	식 의 폐업신 고서
2	사업의 승계(법 제14 조, 시행령 제11조)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	관할 시·도지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승계 신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신고 -별지 제 9 호 서 식의 사 업자 지 위승계 신고서
3	외국자금의 출자 (법 제15조)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거 나 발행하려는 자	시·도지사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 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신문사업자	시·도지사	요구를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해 당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 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는 정기총회 개최 일부터 15일 이내 에 해당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소유제한 사실확인을 위 한 자료의 제출요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자료 제출
5	여론집중도조사 등(법 제17조)	개인, 단체 및 기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제1항)	자료 제출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지원금 또는 용자금의 관리(시행령 제10조)	지원금 또는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매년 1회	지원금 또는 용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실적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보고 자료 제출
2	준공확인(법 제37조)	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장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보고서를 제출		자료 제출
3	자금의 출자(법 제21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의 제출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증거조사(법 제20조)	당사자 쌍방	중재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 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 명령		자료 제출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영화업자의 신고 등 (법 제26조, 시행규 칩 제4조)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미 신고자, 법 제	-신고 -별지 제 1호의2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8조제2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미 변경신고자, 법 제98조 제3항)	서식의 영화업 신고서, 별 지 제 2 호 서식
2	재해예방조치(법 제37조, 시행령 제 16조)	영화상영관을 설 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해당영화상영관에 서 최초로 영화를 상 영하기 전, 변경계획 을 시행하기 이전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 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 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 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 계획을 정하고 이를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2항)	신고
3	영화상영의 신고(법 제41조, 시행규칙 제13조)	영화상영관 경영 자 및 비상설상영 장을 설치·경영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 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	상영금지 또 는 상영정지 (법 제42조), 1 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98조제2항)	신고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		
4	영업 등의 승계(법 제46조,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3항)	신고
5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법 제57조, 시행규칙 제16조)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6조)	신고
6	영업의 승계(법 제63조, 시행규칙 제14조)	제57조(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제58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3항)	-신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신고서
7	폐업 및 직권말소 (법 제64조, 시행규 칙 제23조)	57조 또는 제58조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신고 -별지 제 30호서 식의 비 디오물 영업 폐 업 신 고서
8	부과금의 징수(법 제25조의 2, 시행 령 제9조의 4)	영화상영관 경영자	영화진흥위원회	다음 달 20일까지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 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 의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2항)	자료 제출
9	영화필름등의 제 출(법 제35조, 시행 령 제12조, 시행규 칙 제6조)	영화제작업자	한국영상자료원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 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 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조 제2항)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 을 제출		
10	자료제출의 요청(법 제56조, 제83조)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	영상물등급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등급심사에 필요 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자료 제출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법 제16조, 시행규 칙 제6조, 제7조)	음반·음악영상 물제작업 또는 음 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 운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 사, 시장·군수 ·구청장		영업 신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제5항)	신고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					
2	신고 또는 등록사항 의 변경(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 경 신고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 36 조 제 1 항), 영업의 폐 쇄명령, 등록 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 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 치(법 제27조 제1항)	신고
3	폐업 및 직권말소 (법 제24조, 시행규 칙 제13조)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관할 시·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폐업신고		-신고 -별지 제 13호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식 의 폐업신 고서

(2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변경신고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쇄사의 경영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5조 제1항)	-신고 -별지 제 1 호 서 식의 인 쇄사 신 고서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고(법 제16조)	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을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	신고
2	폐업 및 직권 말소(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폐업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2항)	-신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
3	영업의 승계(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등록·신고관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승계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2항)	-신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업자지 위승계 신고서
4	외국자금의 출자 (법 제21조)	정기간행물을 발 행하거나 발행하 고자 하는 자	등록·신고관청	신고한 날부터 15 일 이내 또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신 청 또는 신고 시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 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 류를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2항)	자료 제출
5	최초 간행물의 제 출(법 제23조, 시행 령 제12조)	제15조 또는 제16 조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를 한 정기 간행물사업자	등록·신고관 청(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 정하여 고시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즉시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 하였을 때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제1항)	자료 제출

(23) 저작권법

순 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감독(법 제108조, 시행령 제52조, 시 행규칙 제20조)	저작권위탁관리 업자, 저작권신탁 관리업자, 저작권 대리중개업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저작권신탁관리업 자는 전년도의 사 업실적 및 해당 연 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3월 31일 까지 저작권대리중개업 자는 전년도의 사 업실적을 매사업연 도 3월 31일까지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 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법 제109조 제1항)	보고 / 명령
2	저작권위탁관리업 의 허가 등(법 제 105조, 시행령 제 48조, 시행규칙 제	저작권대리중개업 을 하고자 하는 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8조)	-신고 -별지 제 48호서 식의 저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번	보고·신고명 (주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9조)						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
3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시행령 제8조)	보상금수령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개월 이내	미분배 보상금 사용보고서의 제출		자료 제출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사업을 하려는 자	시·도지사		사업계획서의 제출		자료 제출

(2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공표 및 결과보고서(법 제17조)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자료 제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법 제20조, 시행규 칙 제21조)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 류별 시설 기준은 시행규 칙 별표 4와 같다)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신고	등록취소 또 는 영업 폐쇄 명령을 하거 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 명령(법 제 32 조 제 2 항),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 38조제2항),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0조제1항)	-신고 -별지 제 13호서 식의 체 육시설 업 신고 (변경신 고)서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순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회원 모집(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자료 제출
3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시행령 제15조)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의 제출		자료 제출
4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4조)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할 시·도지사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준공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 착공계획서를,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		- 자료 제출 -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르 고 , 준공보 고서는 별지 제 5 호 서 식에 따 른다.
5	휴업 또는 폐업 통 보 등(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 통보		-신고 -별지 제 17호서 식의 휴 업 (폐 업) 통 보서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신고(법 제9조, 시행 규칙 제2조, 제3조)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 수·구청장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출판사 경영 신고 및 변경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 제1항)	-신고 -별지 제 1 호 서 식의 신 고서
2	외국간행물의 제출 (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 8조)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한국간 행물 윤리위원 회에 위탁)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외국간행물의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 제1항)	- 자 료 제출 -별지 제 7 호 서 식의 외 국간행 물 견본 제출서

Ⅲ.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현황표

(2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대회시설의 안전점검(시행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	포뮬러원국제 자동차경주대 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자료 제출
2	안전조치 계획(시 행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	조직위원회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안전조치 계획의 제출		자료 제출